외국기업 경영 · 생활환경 개선 토론회 종합보고서

2000. 6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

◇ 이 자료는 1999년 10월 26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생활 애로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가 지난 6개월 동안의 활동 결과와 함께 관련 연구소 및 유관 단체가 이미 발간한 외국인들의 애로를 종합·정리한 것입니다.

◇ 이를 위해 2000년 4월 26일에는 산업자원부의 후원으로 금융·외환, 세무, 노무 및 생활·건축부문의 전문가, 정부 관련 부처의 실무책임자 및 외투기업 대표들을 초청하여 외국인들이 겪고 있는 주요 애로사항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핵심 내용을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 본 자료가 발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4월 26일 토론회 참석자들과 외국인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보고서 또는 자료로 발간해주신 개인, 연구기관 및 유관단체에게 감사드립니다.

◇ 주요 자료 출처 내역

KIEP : KIEP, IMF 체제 이후 외국기업의 영업환경 선진화 방안(1999)
EU : EU Chamber, EU Trade Issues(2000)
AM : Amcham, Improving Korea's Business Climate
SJC : SJC 건의사항(1999)
옴 : 옴부즈만 사무소, 경영활동 애로조사(1999, 2000)
KISC :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대한투자환경 분석(1998,1999)

목 차

제 I 부 외국기업 경영·생활환경 개선 토론회 .. 7

1. 개요 9
2. 행사 일정 9
3. 분야별 토론회 진행 순서 10

제 II 부 외국기업의 경영·생활 애로실태 13

금융·외환	30건

1. 보험회사 영업 활동시 비교평가 금지 15
2. 구주취득에 대한 사전 신고제 16
3. 외국인투자 범위의 제한 16
4. 출자목적물의 범위 제한 17
5. 외투기업 월급의 재투자 제한 18
6. 외화 송금시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19
7. 지역본부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미흡 20
8. 외화표시 대출(단기운전자금)의 제한 21
9. 의무 대출 비율 규제 22
10. 주식 증자시 출자비율의 점감 24
11. 역외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 이체시 규제 26
12. 증권투자회사 설립시 최소 자본금 납입 요건 부담 27
13. 증권투자회사 설립시 전문가 요건 부담 28
14. 개방형 뮤츄얼 펀드의 금지 29
15. 외국은행 지점 추가 설립시 인가 제한 30
16. 차입자본금으로 달러 이외의 통화 불인정 31
17. KOSDAQ의 상장 요건 제한 32
18. 금융감독원의 감독 분담금 제도 32

19. 증권거래소와 투자신탁 협회 가입비용 과다 ····· 34
20. 수출보험공사의 신용 공여한도 기준 불합리 ····· 35
21. 창업투자회사의 최소 자본 납입 요건 ····· 35
22. 은행 보고서류 보고항목 과다 ····· 36
23. 화의시 담보채권 및 신규 지원자금에 대한 보장 부재 ··· 37
24. 보험회사의 의무배당 비율 규제 ····· 38
25. 신용카드의 해외사용 한도 ····· 39
26. 신용카드 발급시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 보증 요구 ····· 40
27. 자금시장에서의 지표금리 부재 ····· 41
28. 선물거래자의 자격요건과 선물거래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 ···· 41
29. 어음의 연쇄부도 우려 및 결재기일 장기화 ····· 42
30. 증권거래소의 상장요건 제한 ····· 43

세 무	11 건

1. M&A 이후 자산 리스시 양도차익 과세 부과 ····· 45
2. 과소 자본 세제에 따른 비용 부담 ····· 46
3.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 48
4. 종업원대부에 대한 지불이자 손금불산입 ····· 49
5. 고정사업장에 대한 국세청의 자의적 해석 ····· 50
6. 해외본사의 공통경비 증명시 불필요 서류 요구 ····· 51
7. 이전가격 증명시 불필요한 서류 요구 ····· 52
8.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감면 판단이 자의적 ····· 53
9. 스톡옵션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국내기업만 적용 ····· 54
10. 외국인 전문 인력의 소득세 부담 ····· 55
11. 조세감면 신청 기한 경과 이후 조세감면 신청 불가 ····· 56

관세 · 통관	11 건

1. 일부재품에 높은 수입관세 ····· 58
2. 한글표시 식품만 통관 가능 ····· 59
3. 식품 수입시 수입제한 ····· 60

4. 식품 가공을 위한 제품원료 및 착색물질 수입제한 ····· 61
5. 우수한 수입업체에 대한 통관 우대조치 부재 ····· 62
6. 복잡한 관세 체계 ····· 63
7. 수입 통관시 EDI제도 적용이 일부 업체에 한정 ····· 64
8. HS 변경에 따른 관세 추가 징수시 소명기회 부재 ····· 64
9. ITA품목과 부품간 역관세 ····· 66
10. 전기용품 안전 검사시 비용부담 과다 ····· 67
11. 화장품 샘플 수입시 국문 표기 요구 ····· 68

노 무	10 건

1. 정리해고 요건 ····· 70
2. 법정 퇴직금제도 ····· 71
3. 연 · 월차, 생리휴가제도 ····· 71
4. 여성근로자의 시간외 근무 제한 ····· 72
5. 근로자 파견업 관련 규제 ····· 73
6. 외국인 산업 연수생 고용인원 제한 ····· 73
7. 보훈 대상자의 고용명령제도 ····· 74
8. 용역사 노조의 모회사 명칭 사용 ····· 76
9. 단체교섭 대상 ····· 77
10. 노사분규와 제 3자 개입 관련 ····· 78

건설	8 건

1. 용도 변경시 경비와 시간 과다 소요 ····· 80
2. 수도권공장 신 · 증설시 면적제한 ····· 81
3. 건축 설계업 진입 제한 ····· 82
4. 공공기관 사업시 국산품 자재 사용 요구 ····· 83
5. 최저가 위주 낙찰제도 운영으로 기술력 우월한 외투기업 불리 ·· 84
6. 건설업 · 감리업 허가시 불필요한 서류 요구 ····· 85
7. PQ 심사시 기술력 평가 미흡 ····· 87
8. 건축사업 진입 제한 ····· 88

마케팅 · 물류	6 건

1. 관리대상화물제도의 자의적 운영 ····· 90
2. 화장품 광고 개선 ····· 90
3. 방송광고의 사용언어 규제 ····· 91
4. 인천국제공항의 지상취급을 한국업체 독점 ····· 92
5. 방송광고 심사시 비용 부담 ····· 92
6. 방송광고 판매시 라디오 광고의 조건부 판매 ····· 93

행 정	13 건

1. 제약업의 위탁생산 제한 ····· 94
2. 머리염색제의 준의약품 분류로 까다로운 등록절차 ····· 94
3. 의료기기 시험시 비용부담 ····· 95
4. 전자상거래시 국외사이트에 대한 방문 판매법 적용 ····· 96
5. 중소기업 판정 기준 불합리 ····· 96
6. 담배소매인 지정시 담배인삼공사의 조사 권한 ····· 97
7. 공무원 순환 보직제로 전문성 결여 ····· 98
8. 공장설립 및 건축 허가시 신고서류 과다 ····· 98
9. 신약 개발시 국제적 기준이 미적용 ····· 99
10. 일반의약품 대체시 국산품 사용을 유도할 우려 ····· 99
11. 식약청 사전 승인시 비용 부담 ····· 100
12. 주류 수입업체와 생산업체의 별도 법인 운영 의무화 ···· 101
13. 동물의약품 제조 · 수입 · 판매시 약사고용 의무 ····· 101

교육 · 생활	17 건

1. 영어 인프라 환경의 열악 ····· 103
2. 취학희망자에 비해 외국인 학교 부족 ····· 103
3. 영어 학원강사의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 ····· 104
4. 외국인을 위한 부동산 알선업체 미흡 ····· 105
5. 외국인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 부재 ····· 106

6. ARS 응답시 영어 안내 미흡 ····· 107
7. 전화 가입시 영문 신청서 미비 ····· 107
8. 외국인을 위한 병원 시설 미흡 ····· 108
9. 병원 이용시 신용카드 사용 불가 ····· 109
10. 외국 운전면허증을 국내 면허로 교환시 장기간 소요 ···· 109
11. 외국인이 국내의 운전면허 취득시 영어 안내 미흡 ····· 110
12. 자동차 구입·등록시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부재 ····· 110
13. 교통 시설물의 영문 병기 부족 ····· 111
14. 이사화물 통관시 불필요한 서류 요구 ····· 112
15. 외국인의 문화생활을 위한 안내자료 부족 ····· 112
16. 전자상거래시 주민등록 번호 요구 ····· 113
17. 다양한 종류의 외국 음식점 부족 ····· 114

출입국관리	3 건

1. 외국인 체류허용기간 제한 ····· 115
2.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 ····· 116
3.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시 대리인출석에 대한 자의적 해석 ····· 117

지적재산권	2 건

1. 위조품의 수입·유통으로 인한 피해 ····· 118
2.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 ····· 119

기타	4 건

1. 변호사업 진입 제한 ····· 120
2. 일간신문, 위성방송의 투자 제한 ····· 121
3. 뉴스공급업의 진입 제한 ····· 122
4. 중소규모 외국인 투자 지원 미흡 ····· 123

제Ⅰ부 외국기업 경영·생활환경 개선 토론회

1. 개요

□ 토론회명 : 외국기업 경영·생활환경 개선 토론회
□ 목　　적 : 외국기업의 경영과 생활애로에 대한 주요 분야의 정부 부처, 외투기업, 학계 및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그 개선 방안 모색
□ 일　　시 : 2000. 4. 26(수) 15:00~18:00
□ 장　　소 : KOTRA 본사
□ 주　　최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
□ 후　　원 : 산업자원부
□ 토론분야 : 금융·외환, 세무·통관, 노무, 생활·건설
□ 참석 인원 : 정부, 외투기업, 학계 및 연구소, KOTRA 직원 등 총 60명

2. 행사 일정

□ 개회식(11층 KOTRA 클럽)

○ 15:00~15:10 : 개회사(산자부 무역투자실장)
○ 15:10~15:15 : 행사 일정 안내(최진계팀장)

□ 분야별 토론회

○ 15:15~15:30 : 분야별 토론장 이동
- 금융·외환 : 10층 간부회의실
- 세　　무 : 10층 영상회의실
- 노　　무 : 10층 이사회의실
- 생활·건설 등 : 지하1층 세미나실

○ 15:30~18:00 : 분야별 토의

3. 분야별 토론회 진행 순서

○ 15:30~15:40 : 진행자 인사말 및 토론자 소개
○ 15:40~16:00 : 전문가 주제 발표
○ 16:00~17:30 : 3~4개의 안건 토론
- 옴부즈만사무소 홈닥터의 건별 발제
- 외투기업 또는 기관의 의견청취
- 전문가의 의견 청취
- 담당공무원 의견 청취
- 홈닥터의 요약 정리

○ 17:30~17:55 : 자유 토의
- 여타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 17:55~18:00 : 진행자 종합강평 및 폐회

4. 분야별 토론자

□ 금융·외환

구 분	참 석 자
진 행	어 윤 대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
발 표	박 원 암 홍익대 무역학과 교수
토 론	김 경 희 재경부 국제조세과 사무관 김 삼 생 한국은행 외환운영팀장 김 용 민 홍콩 상하이 은행 부지점장 정 봉 근 크레디트 리요네 부장 Mr.Hiroshi Morino 일본 Toray 한국회장 최 병 훈 KISC 종합상담실 부장 안 영 섭, 박 영 준, 김 승 진 옴부즈만사무소 홈닥터

□ 세무·통관

구 분	참 석 자
진 행	박 봉 규 국제협력투자심의관
발 표	박 윤 종 안건조세정보 대표(회계사)
토 론	김 한 기 행정자치부 세제과 사무관 김 경 희 재경부 국제조세과 사무관 김 충 국 국세청 국제업무과 사무관 서 영 만 KISC 국세청 파견관 노 영 훈 조세연구원 연구조정부장 이 근 모 한국바스프 통합관리부문 사장 이 상 곤 한국바스프 전략기획부장 이 주 흔 한국하인츠 상무 오 동 화 옴부즈만사무소 홈닥터

□ 노무

구 분	참 석 자
진 행	이 기 우 KISC 종합상담실장
발 표	박 우 성 박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김 헌 수 노동부 노정과장 오 복 수 KISC 노동부 파견 사무관 하 유 성 국가보훈처 복지지원과 사무관 조 성 연 블루벨코리아 인사팀장 이 화 진 씨바 스페셜티케미컬스 이사 구 상 조 볼보건설기계코리아 팀장 김 종 천 노바티스 아그로 코리아 부장 홍 덕 천, 함 준 호 옴부즈만사무소 홈닥터

□ 생활·건설 등

구 분	참 석 자
진 행	윤 영 선 투자정책과장
발 표	장 윤 종 박사 KIET 선임연구위원 고 준 성 박사 KIET 연구위원
토 론	유 성 룡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서기관 윤 성 원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 사무관 윤 인 대 KISC 건설교통부 파견 사무관 박 경 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박 용 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박사 이 상 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 김 의 석 BHP Korea 책임연구원 정 승 섭 서울부동산컨설팅 이사 한 효 식 한국후루워대니얼 대표이사 김평회, 정호빈 옴부즈만사무소 홈닥터

제 II부. 외국기업의 경영·생활 애로 실태

금융 · 외환	30 건

1. 보험회사 영업 활동시 비교평가의 금지(AM, 김민석 58 Page)

□ 현황 및 문제점

○ 보험업 법 제156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보험계약의 계약조항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한 사항을 알리거나 보험계약의 계약조항 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보험회사가 영업활동을 할 때 다른 보험회사나 상품내역 등 계약조건에 대하여 비교 평가하는 행위는 정당한 영업활동으로서 비교평가의 금지 조항은 기업의 정상적인 마케팅 행위를 제한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을 막고 있음.

□ 관련 근거

○ 보험업법 제156조

□ 요구 사항

○ 허위 · 과장광고 등에 대하여는 금지하되, 객관적인 사실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은 인정

□ 전문가 의견

○ 외국인투자자 고충의 유형별 분류로 보면 '여수신 및 감독 관련'으로 분류되는 바, 감독 당국은 금융기관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감독활동을 벌여야하는 것인 타당함에 비추어 금융기관의 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경향에 포함되는 본 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됨.

○ 특히, 외국보험사의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건과 같은 불요불급한 규제는 과감하게 해제하는 것이 필요함.

2. 구주 취득에 대한 사전 신고제(KIEP, 118 PAGE)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 제1항에서는 기존주식의 취득에 대해 사전신고를 요구하고 있음

○ 적대적 M&A의 경우 그 성격상 사전신고가 불가능하므로, 현행 구주 취득에 대한 사전신고 조항은 외국인투자가가 실질적으로 적대적 M&A를 할 수 없도록 함

□ 관련 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 제1항

□ 요구 사항

○ 방위산업체 영위기업의 기존주식 취득을 제외하고는 기존 주식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해 사전신고를 사후 신고로 대체하는 방안 검토

□ 전문가 의견

○ 외국인 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제1장 제4조 외국인투자대상 제한업종 및 동규정 제2장 제5조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에서 규정하는 업종이외의 업종에 대한 기존주식 취득의 경우, 사전신고를 사후 신고로 대체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3. 외국인투자 범위의 제한(KIEP, 115 PAGE)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합작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10% 미만도 적용)와 해외 관련 기업에 의한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의 경우만 외국인투자로 정의하고 있음.

○ 투자 보호 및 내국민 대우의 보장 측면에서 광범위한 형태의 외국인 투자를 포괄하지 못함.

□ 관련 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 요구 사항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의 정의에 다음을 포함할 필요성 있음. (지사, 연락사무소, 1년 이상의 장기 포트폴리오 투자, 인적투자, 한국에서의 공동 연구개발 프로그램, 지역본부사업, 장기계약에 의한 전략적 제휴, 비영리기구,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설립)

○ 단, 이 경우 송금의 자유 및 내국민대우 보장 등 투자보호를 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조는 모든 형태의 외국인투자에 적용시키되, 인센티브 등 외국인투자지원에 관련된 조항(제9조~제13조 및 제18조)은 지사, 연락사무소, 포트폴리오 투자 등의 외국인 투자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전문가 의견

외국인의 투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지사,연락사무소, 포트폴리오 투자에도 조세 및 인센티브 적용 바람직함.

4. 출자 목적물의 범위 제한(KIEP, 117 PAGE)

□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출자목적물에는 대외지급수단, 자본재, 배당금, 산업재산권 및 이에 준하는 기술과 사용권리, 지점 및 투자법인의 청산시 잔여 재산,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및 부동산 처분 금액이 해당됨.

- 경영상 노하우는 출자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노하우를 지닌 외국 기업이 노하우를 주식으로 출자하여 국내기업 또는 내국인과 합작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어려움.

□ 관련 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 요구 사항

○ 노하우에 대하여도 공증을 받은 계약이 있으면 출자 목적물로 인정

□ 전문가 의견

○ 외투촉진법상의 투자목적물 (동법제2조 7항) 중의 무형재산에 해당하는 항목은 라. 산업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로 되어 있음.

○ 경영 상의 노하우는 객관적인 평가가 곤란하며 국내에 평가 가능한 기관의 존재도 의문임. 따라서, 공증을 통한 계약이 있더라도 이의 인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5. 외투기업 월급의 재투자 제한(김민석, 19 PAGE)

□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 투자기업의 월급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출자목적물에 해당되지 않아 직접투자를 할 수 없고 역외시장으로 한번 유출되었다가 다시 유입되는 경우에만 외국인투자로 간주하고 있음.

□ 관련 근거

ㅇ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 요구 사항

ㅇ 출처가 정당한 자금은 적절한 심사과정을 통하여 투자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등을 강구

□ 전문가 의견

ㅇ 외국인투자자 고충의 유형별 분류로 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제한'으로 분류되는 바, 투자목적물의 제한 완화의 전체 명제에 부합되는 의미에서라도 월급도 정당하게 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투자재원으로 인정함은 물론 스톡 옵션 등도 투자재원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6. 외화 송금시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옴부즈만99, 30 PAGE)

□ 현황 및 문제점

ㅇ 외화 송금 시마다 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 확인서' 또는 '납세 완납 증명서'의 첨부 요구로 인해 유사한 업무의 반복 및 처리지연으로 시급을 요하는 해외 송금 업무 수행에 불편

ㅇ 국세청은 '납부할 세액확인서'의 경우 관련 서류를 2부 작성하여 납세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배당소득 또는 유가증권 양도 관련 신청서에 대하여는 3일이내에, 기타 신청서는 당일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관련 근거

ㅇ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9조, 외국환관리규정 제7-84조

□ 요구 사항

○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 제한을 완화 및 전산화로 신속한 행정처리

□ 전문가 의견

○ 기본 취지인 세수확보의 문제가 없는한 신속한처리가 필요함에 따라 확인 과정을 전산화함으로써 상호체크가 필요함.

7. 지역본부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미흡(KIEP, 71,119 PAGE)

□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충하였으나, 그 대상사업이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한정되어 있음

○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등 향후 동북아 지역의 외국인투자의 거점으로서 한국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거점형 외국인 투자인 지역본부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관련 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 요구 사항

○ 지역본부 사업을 국내의 본부가 3개 이상의 역외 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소득을 받는 경우로 규정하고 인센티브 제공

□ 전문가 의견

○ 지역본부의 역할은 사업의 추진의 지역 추진본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질 투자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주어야함.(예, 싱가포르)

8. 외화 표시대출(단기운전자금)의 제한(일, 13 PAGE)

□ 현황 및 문제점

○ 외화여수신에 관한 규정은 외화대출의 범위를 ① 물품의 수입 또는 기술도입대가 및 용역비 지급과 관련된 대외 외화결제자금 ② 해외직접투자자금 ③ 한국수출입은행과의 협조융자자금 ④ 국산기계구입자금 ⑤ 대외 외화차입금 원리금 상환자금으로 정하고 있어 자금의 용도가 자유로운 단기 운전자금의 외화대출은 인정되지 않고 있음.

○ 자금 조달의 다양화나 외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자금의 용도가 자유로운 외화 차입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음.

□ 관련 근거

○ 외화 여수신에 관한 규정 제3조

□ 요구 사항

○ 기업 활동에 필요한 단기운전자금에 대한 외화대출 인정

□ 정부측 의견

○ 기본적으로 외화대출은 대외지급용으로 사용되므로 이에 대한 용도제한은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음은 인정하나, 국내단기운전자금(외화대출)의 제한은 단기외채관리 면에서 최소한의 제한을 두고있음. 특히, 30대 계열기업군은 재무상태등을 고려하여 단기외화대출을 신축적으로 운영중임.

□ 외투기업 의견

○ 단기외화수요는 현재 국내규제 등으로 인하여 크지는 않으나, 외투기업에서 당좌대출용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환리스크나 금리비교 면에서 단기대출이 유리한 것이 사실임.

○ 단기 대출 시 충분한 상환능력을 고려하기 때문에 단기외채관리에는 문제가 없음.

□ 전문가 의견

○ 자본자유화의 성공, 국제수지방어능력의 성숙,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성공으로 단기외채(국내)사용목적 등 규제를 완화해야할 필요성 대두

○ 그렇게 함으로써 대기업의 변칙 거래도 방지할 수 있음.

○ 변동환률제의 성공적 도입 및 적용으로 자율규제가능

○ 단기 외화 대출기간 및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국내외환시장 및 외환자금시장의 활성화필요.

9. 의무 대출 비율 규제(AM ,일 14 PAGE)

□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은행은 영업 규모가 국내은행에 비해 지점 수 및 영업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규제가 적용되어 영업상 제약요인으로 작용

- 현재 중소기업 대출을 위하여 외국은행 지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총액한도대출 수혜 받는 경우 대출금의 35%, 미수혜은행은 25%로 대출 비율 규제를 받고 있음

○ 동일인·동일그룹에 대한 대출을 자기자본(외국은행은 차입자본금)의 일정 비율로 하고 있어 자본금이 적은 외국은행은 영업상 제약요인으로 작용

□ 관련 근거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제2조 제8항, 금융기관감독규정

□ 요구 사항

○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대한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규제 적용을 배제
○ 동일인 · 동일그룹 대출규제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범위를 조정

□ 정부측 의견

○ 동일인/그룹 대출한도에 관한 현실적 조정요구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서 검토 중이며, 규제로 인한 경영 상 어려움에 대해 현실적인 보완대책 검토.

○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에 관하여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운용하고있음. (예를 들어 중소기업 발행금융채 구입시 대출로 간주하는 등)

○ 대부분의 외국은행이 비율을 지키고 있으나 실제로 일본계 야마구치은행이 현재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등 감독당국의 입장은 은행자산 운용에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임.

○ 영업 여건과 국내은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완화할 계획이며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사항임.

□ 외투기업 입장

○ 시티은행은 중소기업 전담반을 구성 우량중소기업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실제로 어려움이 많음. 대만에서는 중소기업 대출로 상당한 부실발생한 사례로 있음.

○ 동일인 한도는 거액의 신용장 개설 및 거액여신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므로, 현재 대기업의 영업의 국제화에 맞추어 외국은행 본점자본금을 국내자본금으로 영업상 인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의견

○ 외국은행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여야할 하는 시점에 와 있음. 왜냐하면 금년도가 외국은행의(일부) 철수여부의 해가 될 수도 있는 등 외국은행의 영업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 경우 신규 해외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시티은행, 홍콩은행 등은 도매금융(기업위주)에서 소매금융(소비자금융)으로 전환하며 국내소매금융시장에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하고 있음.

○ 국내 은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의무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로 인하여 외국은행의 선진금융 서비스 기법을 국내에 원활히 도입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10. 주식 증자시 출자 비율의 점감(일, 22 PAGE)

□ 현황 및 문제점

○ 외국투자기업이 한국에서 투자를 하여도 종업원 지주 조합원에 대한 우선적인 주식의 할당(20%)가 있기 때문에 증자시마다 투자기업의 출자비율이 감소하여 장래 경영권 유지가 불안함

○ 적용 대상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증권거래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시행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있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할 경우 적용 제외(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1항 제1조)

□ 관련 근거

○ 증권거래법 제191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 개선방안

○ 증권거래법에 명시된 대로 외투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 개정

□ 전문가 의견

○ 외국인투자가 입장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함 다시 말하면,

- 주식증자시 출자비율의 점감 문제는 외국투자가의 경영권유지 등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

- 합작투자(Joint Venture)의 경우, 투자비율은 기업의 지배권(경영권) 차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짐

- 미주, 구주의 투자형태는 단독투자(100%)가 주류인 반면, 일본의 투자형태는 국내기업과의 합작투자 (Joint Venture)가 일반적이라는 투자형태 면에서의 관심 필요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7(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제①항의 1에 대한 법적인 후속조치의 검토가 필요

□ 정부측 의견

○ 우리 사주조합제도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

○ 비상장법인(국내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 배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그러나, 외국인 투자법인에만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7(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내국기업과의 형평성 및 역차별 문제 등으로 인하여 곤란함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7 제①항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

자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과 관련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동 조항의 시행 시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선정 문제 및 외국인 투자기업 간의 형평성의 문제,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복지 및 재산형성, 노사문제, 노사정위원회의 활동 등의 현실에 비추어 시행이 곤란함. 따라서, 동 예외조항의 삭제를 검토중 임.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 배정)에서는 우리사주조합원은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20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 회사측과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결정할 수 있음.

○ 즉, 현행 법규 내에서 여타의 방법으로 종업원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종업원이 유통시장에서 자사주 매입을 원할 경우 회사측에서 매입자금의 일부를 지원 또는 대여하는 방법, 또는 성과배분제도의 확대 등), 노사간의 협의를 통하여 배정비율을 낮추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임.

○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여타 방법을 통한 성과배분의 확대와, 동제도 도입취지의 성과를 보아가며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겠음.

11. 역외계정과 일반 계정간의 자금 이체시 규제(KIEP, 126 PAGE)

□ 현황 및 문제점

○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상대로 운영하는 역외계정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일반계정과 역외계정간의 자금 이체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음.

○ 비거주자를 상대로 운용하는 역외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 이체에 대해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게되어 있음.

□ 관련 근거

○ 외국환거래규정 제2-11조

□ 요구 사항

○ 역외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 이체에 있어 일정규모 이하의 자금이체에 대해서는 건수와 금액을 합계하여 신고하도록 역외금융 제한 완화

□ 전문가 의견

○ 현재 외환의 국제화 또는 자유화 단계에서 볼 때 두계정의 이동은 필수적임. 그러나, 한국외환시장의 성숙도를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예, 5백만불)이상의 경우 규제 필요함.

12. 증권투자회사 설립시 최소 자본금 납입 요건 부담(KIEP, 126 PAGE)

□ 현황 및 문제점

○ 투자신탁회사, 뮤츄얼펀드, 일임투자자문회사, 투자자문회사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각각 100억원, 70억원, 30억원, 5억원 등의 자본을 납입하여야 함.

○ 최소 자본금 납입 요건이 과다하여 중소규모 외국인 투자가 어려움.

□ 관련 근거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 증권투자회사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 증권거래법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 요구 사항

○ 최소자본금 납입 요건을 완화

□ 전문가 의견

○ 외국인 투자자 고충의 면에서는 이해가 되나, 투자자보호 및 금융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이의 일방적 완화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현재의 증권투자회사 자본금 납입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할 필요가 있음.

13. 증권투자회사 설립시 전문가 요건 부담(KIEP, 126 PAGE)

□ 현황 및 문제점

○ 투자신탁회사나 일임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명의 전문가를 보유해야 하며, 뮤츄얼펀드나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최소 5명의 전문가가 요구됨

- 전문가의 자격 요건도 투자신탁회사나 자문회사 또는 10조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외국 회사에서 펀드매니저로서 2년 이상의 근무 경력 등을 요구

○ 중소규모의 외국인 투자가 어려움

□ 관련 근거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 증권투자회사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 증권거래법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 요구 사항

○ 전문가 수 및 자격 요건 완화

□ 전문가 의견

○ 외국인 투자자 고충의 유형별 분류로 보면 '증권제도 관련 고충'으로 분류되나 2000년 6월까지 자격조건이 완화된 대체인력의 고용이 가능하고 전문투자자격을 획득하는 인력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인력수급문제는 점차 해결될 것으로 전망됨.

14. 개방형 뮤츄얼 펀드의 금지(전경련, 13 PAGE)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증권투자회사법상 금융상품은 가입후 환매불가능한 폐쇄형 뮤츄얼 펀드만 허용되고 있으며, 투자자의 유동성 제약을 보완하고자 주식상장이나 코스닥 상장을 통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펀드 규모와 가입자 수에 대한 조건 등 상장 요건 등이 엄격하여 뮤츄얼펀드 투자자의 환금성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증권투자회사의 상품개발 등에서 한계가 존재.

○ 증권투자회사법 시행일(98년 9월)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방형 뮤츄얼펀드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작성토록 되어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 관련 근거

○ 증권투자회사법 부칙

□ 요구 사항

○ 직접금융시장이 발달된 미국의 경우 개방형뮤츄얼 펀드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주식관련상품의 자율성 보장이 증권시장 발전의 전제가 되는 만큼 개방형 뮤츄얼 펀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

□ 전문가 의견

○ 외국인투자자 고충의 유형별 분류로 보면 '증권제도 관련 고충'으로 분류되나 현재 관계 당국에서 투신권 정상화 방안과 맞물려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허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바 이의 해결이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15. 외국은행 지점 추가 설립시 인가 제한(KIEP, 126/89 PAGE)

□ 현황 및 문제점

○ 지점 추가 설립시 국내 은행은 은행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외국은행은 국내은행과는 달리 금융감독원이 상호 호혜주의를 바탕으로 인가를 내주고 있어 인가가 어려움, 외국은행은 처음 국내지점을 설립할 때와 같은 인허가 요건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 또한 외국은행지점의 설립 요건인 ①외국은행지점의 운영에 필요한 영업기금, 조직, 업무운영체계 및 내부통제제도를 갖출 것 ②외국은행지점의 영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될 것 ③외국은행지점, 본점 및 관계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감독상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 등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인가를 하고 있음.

□ 관련 근거

○ 은행법 제13조, 제58조, 은행업 인가지침

□ 요구 사항

○ 외국은행 지점 추가 설립시 인허가 조건 명확히 규정

□ 전문가 의견

○ 국제금융시장의 범세계화 추세에 비추어 가능한 많은 외국은행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긴요하며, 외국은행의 거점 마련을 도와주는 것이 결국은 적은 비용으로 국제금융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단, 인허가 기준은 국내금융시장을 교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전성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고, 국제적 호혜원칙에 의거 허가함이 필요.

16. 차입자본금으로 달러이외의 통화 불인정(일, 14 PAGE)

□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은행의 차입 자본금으로 제3국 주요통화(예:엔)는 제외하고 달러만을 인정하고 있음

○ 달러 이외의 화폐를 모국 화폐단위로 하고 있는 외국은행은 환전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저금리의 자본을 모국으로부터 차입할 수 없음.

□ 관련 근거

○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제2조 제8항, 금융기관감독규정

□ 요구 사항

○ 차입 자본금으로 달러 이외의 주요국 화폐(EURO화, 엔화)를 인정

□ 전문가 의견

○ 국내에 국제외환자금시장의 설립이 필요한 바 달러 이외의 통화로도 자본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필수적임.

17. KOSDAQ의 상장 요건 제한(KIEP, 91,127 PAGE)

□ 현황 및 문제점

○ KOSDAQ의 상장 요건이 엄격하여 M&A투자, 벤처투자, BOT투자 등을 저해

- 자본금 5억원의 경우 설립이 3년이 지나고 경상이익을 내야 상장이 가능함

- 미국 NASDAQ에서는 세전 이익이 있는 경우는 설립 요건이 제한이 없고 세전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설립 2년후면 상장이 가능함

□ 관련 근거

○ KOSDAQ 협회 중개시장 운영규정 제4-3조

□ 요구 사항

○ 일반 기업의 KOSDAQ 등록 요건 완화

□ 전문가 의견

○ 한국 증권시장을 미국 시장과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무엇보다도 투자자의 보호와 금융질서의 안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투기적 거래가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의 완화를 거론하기는 어려움.

18. 금융감독원의 감독 분담금 제도(일, KIEP, 88 PAGE)

□ 현황 및 문제점

○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부출연금, 한국은행출연금, 은행 및 증권회사 등의 출연금 및 분담금을 재원으로 할 수 있으나, 한국은행의 출연금과 은행 및 증권회사의

분담금으로 운영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 제도는 준조세 성격을 지니며, 분담률 계산에 있어서도 예금자의 수가 적고 차입거래의 대부분이 본사와 지사와의 거래인 외국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있음(분담금 산출기준을 총부채를 기준으로 함).

□ 관련 근거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 요구 사항

○ 외국계 은행의 특성을 감안한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

□ 전문가 의견

○ 감독 기구의 형태(분리, 통합, 정부기구, 비정부기구 등)에는 차이가 있으나, 동 제도는 미국, 독일, 영국, 호주 등 외국선진국에서도 유사한 감독분담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다만, 일본의 경우는 정부기구의 형태로 되어 있어 모든 재원을 국가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한국의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행정기구로 분류되지 않음.

○ 금융감독원 측에서도 금년 1월28일 분담금징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은행의 경우 부채 중 자본금성격을 띤 乙기금(한은 스왑자금 예치금)은 총부채 금액에서 차감하고, 또한 금융감독원의 예산 집행 후 잔여 예산액은 익년도 징수분담금에서 차감하여 징수하고 있는 등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다만, 은행에 대한 동 제도의 시행이 99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만큼,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적인 제도개선의 여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19. 증권거래소와 투자신탁협회 가입비용 과다(일, KIEP, 127 PAGE)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증권거래소와 한국투자신탁협회의 정회원 가입비용으로 각각 222억원(99년말 기준)과 3억원을 부과하고 있음.

- 홍콩의 경우 증권거래소 가입 비용이 HK$12,000이고, 싱가포르의 경우는 s$2,000~s$20,000에 불과함.

○ 가입 비용이 과다하여 외국 증권회사가 한국에서 영업을 개시할 때 과도한 비용부담 요인이 되고 있음.

□ 요구 사항

○ 증권거래소 및 투자신탁협회 가입 비용 인하

□ 전문가 의견

○ 증권거래소 회원 가입비용 및 산정 방식 (전사업년도말 거래소 순자산/정회원수)과 관련하여서는 증권거래소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거래소의 정관 변경은 회원총회 결의 후 재경부장관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임(증권거래법 제74조 2항).

○ 거래소 측에서도 가입비용 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래소의 순자산이 회원사 각각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과, 거래소가 비영리특수법인 또는 민법중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이 인하방법 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가입비용 산출방식의 변경 등, 회원사 간의 협의를 통한 가입비 인하의 검토가 필요함.

20. 수출보험공사의 신용 공여 한도 기준 불합리(옴99, 30 PAGE)

□ 현황 및 문제점

○ 수출보험공사의 신용공여한도 신청시 전년도 수출실적을 근거로 평가하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성을 반영하기 곤란

○ 최근월에 수출 실적이 급신장한 기업은 이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반대로 실적이 크게 저조한 경우 상대적으로 수혜의 폭이 많아지는 문제점이 있음.

□ 관련 근거

○ 수출보험공사의 개별보험평가요소별 배정 및 총평점별 책정 가능 한도

□ 요구 사항

○ 적용 기준은 전년도 실적을 근거로 하되, 한도시청 시점에서 과거 1년 동안의 은행 네고 실적을 감안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재조정하는 등 신축적인 운용 필요

□ 전문가 의견

○ 적용 기준은 전년도 실적을 근거로 하되, 한도신청 시점에서 과거 1년 동안의 은행 네고실적을 감안하여 신용공여 한도를 재조정하거나, 또는 최근 반기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등의 합리적인 운용 필요성이 있음.

21. 창업투자회사의 최소 자본 납입 요건(KIEP, 90 PAGE)

□ 현황 및 문제점

○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최소 자본 납입 요건(100억원)이 과다하여 외국 벤처펀드회사의 진입장벽으로 인식

□ 관련 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 시행령 제12조

□ 요구 사항

○ 최소한의 규모로 회사를 설립하여 점차적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전문가 의견

○ 외국인투자자 고충의 유형별 분류로 보면 '증권제도 관련 고충'으로 분류되나 창업투자사의 성격 상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기술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납입자본의 규모가 상당히 커야하는 것은 인정함.

○ 단, 100억의 납입자본 규정이 적합한가에 대한 것은 창투시장의 안정적 육성이라는 목적을 감안하여 장기연구과제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22. 은행 보고 서류 보고 항목 과다(KIEP, 127 PAGE)

□ 현황 및 문제점

○ 외환거래법 개정 이후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보고서류가 많음.

○ 외국은행은 분기별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금융기관 파생금융상품 통화별, 잔여만기별, 거래주체별 외화 B/S 보고, 본점국적별 파생금융상품 총괄 외화 B/S보고, 국적 및 잔여만기별 외화 B/S보고, 외화표시 예금의 증감내역 및 잔고 중의 하나 등의 보고서는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관련 근거

○ 외국환 거래규정 제10 - 14조

□ 요구 사항

○ 상세 내역을 모두 보고하게 되어 있는 대내외 외국환 송금에 대한 보고를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만 보고하도록 하고, 그에 미달하는 거래는 모두 합하여 합계 거래액과 거래수를 보고하도록 완화

□ 전문가 의견

○ 금융감독기관의 업무 간소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보고서만을 받도록 개선 필요

23. 화의시 담보채권 및 신규지원자금 보장 부재 (KIEP, 146 PAGE)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화의 보전 처분에 담보 채권은 구속하지 않고, 무담보 채권만 구속하고, 또한 신규 지원자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음
- 담보채권이 화의 보전 처분이 되지 않아 담보 채권자가 수시로 회수 요구를 할 경우 대상기업이 다시 부실화할 우려가 있음
- 신규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수시 변제권이 없어 신규 자금을 통하여 기업의 재건을 꾀하기 어려움

○ 외국인 투자가가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화의기업을 인수하고 싶어도 기업재건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다시 부실화할 우려를 갖고 있어 인수를 꺼리게 됨

□ 관련 근거

○ 화의법 제43 - 45조

□ 요구 사항

○ 담보채권을 화의 채권에 포함시키고, 단 무담보 채권보다 우선되는 변제권을 부여

ㅇ 신규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담보채권보다 우선되는 변제권을 부여

□ 전문가 의견

ㅇ 화의를 통한 기업의 재생을 돕기 위해서는 담보채권을 화의채권에 포함시키고 업계요구 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함.

24. 보험회사의 의무 배당 비율 규제(AM)

□ 현황 및 문제점

ㅇ 보험회사는 당해 연도 수익 중 준비금 적립을 제외한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가입자에게 배당하여야 하므로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있음

ㅇ 보험감독규정 제78조에서 보험사업자는 연도 수익 중 매회계년도말에 당해 회계연도 중 신규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을 제외한 책임준비금을 우선 적립한 후 잔여액을 유배당 보험 이익에 대한 주주지분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잔여부분은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하여야 함.
- 직전 회계년도말 지급여력비율이 8% 이상인 보험사업자 : 15% 이하
- 지급여력비율이 4% 이상 8%미만인 생명보험사업자 : 12.5% 이하
- 지급여력비율이 4% 미만인 생명보험사업자 : 10%이하

□ 관련 근거

ㅇ 보험감독규정 제78조

□ 요구 사항

ㅇ 보험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전문가 의견

ㅇ 외국인투자자 고충의 유형별 분류로 보면 '여수신감독 관련 고충'으로 분류되며, 금융기관 총량규제의 추세(예, 은행의 경우에 BIS기준)에 맞

추어 개별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험사 전체의 경영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5. 신용카드의 해외 사용한도(옴00,15PAGE)

□ 현황 및 문제점

○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행업자는 신용카드 사용자 중 월 5천불을 초과하여 해외사용한자의 명단 및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신용카드 사용자가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한도($5000/1인1월)를 넘게 지출하는 경우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 발생.

□ 관련 근거

○ 외국환거래규정 제4-13조

□ 요구 사항

○ 외환자유화 추세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한도 폐지

□ 전문가 의견

○ 외국인투자자 고충의 유형별 분류로 보면 '외국환법규 관련 고충'으로 분류되나 2000년 이후 외환거래가 획기적으로 자유화될 것임을 감안하여 신용한도 부여를 신용카드사 자율에 맡기고, 개인의 신용도 평가에 따라 자율적으로 한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6. 신용카드 발급시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 보증 요구 (KISC 98, 106 PAGE)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카드사의 외국인이 개인자격으로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내국인의 연대 보증인 1인 이상의 보증을 받는 경우 개인 회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 단 외국인이 취업한 국내기업의 대표자, 경리담당 책임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추천서를 받고 연대 보증인을 생략할 수 있으나 내국인의 경우 연대보증인 제도 및 추천서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관련 근거

○ BC카드 입회기준표 등

□ 요구 사항

○ 신용카드 발급시 내국인과 같이 개인의 신용이나 거래실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발급하도록 개선

□ 전문가 의견

○ 외국인투자자 고충의 유형별 분류로 보면 '외국환법규 관련 고충'으로 분류되나, 본 건은 개별 카드 회사의 경영 방침에 관한 것이므로 이의 완화를 일괄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외국인에 대한 국가별 개인별 신용조회 체계를 활용하여 점차 완화토록 업계에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함.

27. 자금시장에서의 지표금리의 부재(일, 20 PAGE)

□ 현황 및 문제점

○ 은행이 자금 운용·조달할 때 LIBOR나 TIBOR 등 지표금리가 존재하지 않아 기준금리로 콜, CD(1개월, 3개월)을 사용하지 않을 수 밖에 없고, 이것들의 종류도 한정되어 있음.

○ 지표금리의 부재로 인하여 은행이 고객에게 금리의 정적한 제시가 곤란하며, 고객의 경우 은행이 제시한 금리의 수준이 적정한 수준인지 가늠하기가 곤란함.

□ 요구 사항

○ 한국은행 등이 국내은행·외국은행 지점으로 부터의 금리를 조사하여 그 평균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LIBOR·TIBOR 등과 같은 지표 금리를 정착

□ 전문가 의견

○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의 미발달로 LIBOR와 같은 지표금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금융기관 간 자금중개시장이 미발달한 점도 다양한 지표금리를 설정 활용하지 못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판단됨. 따라서, 금융당국은 국내 자금중개시장 발전방안의 하나로 지표금리를 개발 및 육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8. 선물거래자의 자격요건과 선물거래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 (KIEP, 86 PAGE)

□ 현황 및 문제점

○ 선물거래자의 자격 요건과 선물거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음

○ 선물거래자의 자격요건으로 자본금 30억원 이상으로서, 선물거래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선물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자, 재경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자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3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99년 4월 개설된 선물거래소는 국채선물, CD선물, 달러선물, 달러옵션, 금선물 등 총5개 품목의 선물만 취급하고 있음.

□ 관련 근거

○ 선물거래법 제10조 제1항

□ 요구 사항

○ 선물시장의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 및 선물거래자의 자격 요건 완화

□ 전문가 의견

○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제도 관련 고충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선물시장은 고도의 테크닉을 요구하는 고위험시장이고, 우리나라 선물시장의 역사가 일천한 점을 감안하여 자격자 조건의 점차적인 완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상품의 다양화는 시장여건의 성숙과 더불어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29. 어음 연쇄부도 우려 및 결제 기일 장기화(AM)

□ 현황 및 문제점

○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기업은 어음 결제 Schedule에 의존하여 자금을 관리할 뿐 아니라, 배서·양도를 통하여 지급 수단으로 재사용함으로써 1개어음이 다수의 기업에 연관되어 있어 어음 거래 기업 중 한 업체의 자금난이 연쇄적인 지급 불능상태와 부도의 초래하고 있음.

※어음장 이면의 배서란은 3회까지 마련되어 있으나, 실거래에서 부전지 첨부를 통하여 10회 이상까지 배서하는 경우가 많음.

○ 중소기업의 평균 어음 대금 회수 기일이 평균 135일로 대부분의 외국기업의 결제 기일(45~60일)과 상이함.

□ 요구 사항

○ 최근 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있는 여건을 활용하여

- 대체수단을 통한 결제 확대 등 어음 거래의 축소 방안 검토

○ 대금 결제 기일의 단축 유도

□ 전문가 의견

○ 우리나라의 상거래 관행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단기간에 급격한 제도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음. 현재 금융당국에서도 어음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하여 직접결제를 장려하고 대기업에서 어음지급을 자제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30. 증권거래소의 상장요건 제한(KIEP, 127 PAGE)

□ 현황 및 문제점

○ 증권거래소의 상장 요건이 기업의 규모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NYSE 등 선진 증권거래소에서는 기업의 규모나 특성을 감안하여 선택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한 국	뉴 욕	동 경
○ 다음을 모두 충족 -최근 3년간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시현 -납입자본금이익률이 최근 25% 이상, 최근 3년합계 50% 이상 -수익가치가 액면가의 2배 이상	○ 다음의 하나를 충족 (세전이익 기준) -최근 250만$이상, 직전 2년 200만$ 이상 -최근 3년간 합계 650만$이상(최근년도 450만$ 이상) -최근 6개월간 시가총액이 10억$이상인 경우 최근 연도 수익이 2.5억$ 이상	○ 다음의 하나를 충족 (세전이익기준) -최근 3년기준으로 최초 1년간 1억엔 이상, 최근 1년간 4억엔 이상, 최근 3년간 합계 6억엔 이상 -최근 2년 기준으로 최초 1년간 1억엔 이상, 최근 1년간 4억엔 이상

□ 관련 근거

○ 증권거래소 상장규정

□ 요구 사항

○ 기업 특성이나 규모에 따라 탄력적 기준 적용

□ 전문가 의견

○ 상장요건의 제한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것이나, 국내 자본시장 발전 및 기업의 직접금융 기회의 확대 차원에서 상장요건의 완화, 또는 적용기준의 다양화 필요성 있음

세 무	11 건

1. M&A이후 자산리스시 양도차익과세 부과(KIEP, 124 PAGE)

□ 현황 및 문제점

○ M&A 협상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가는 미래현금할인법을 통해 가치를 산정하는 반면, 한국 상대방은 주로 현재의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협상의 애로가 있음.

○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외국인투자가가 자산을 인수하고 다시 한국 상대방에 리스해 주는 방식이 있음. 이 때 한국 상대방은 자산을 외국투자가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양도차익 과세를 납부해야함

○ 법적인 측면에서는 자산의 양도가 있었지만 한국 상대방이 계속 자산을 사용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해 과세이연 조치 필요

□ 관련근거

○ 법인세법 제50조

□ 요구사항

○ 현재 법인세법 제50조상 자산교환의 경우 적용되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 조치를 M&A 이후 자산을 양도자에게 리스하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

□ 전문가 의견

○ 리스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부동산 등 매각차익을 분할인식하면 납세액이 유탈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이연되는 것으로 과세이연토록 함이 바람직함.

2.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비용 부담 (일, 30 PAGE)

□ 현황 및 문제점

○ 97년 IMF 위기시 한국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외화 도입을 증가시켰으나 원화하락으로 서울지점의 자기자본 비율이 본점에 크게 미달하여 본지점 차입금이 서울지점 자기 자본의 6배를 초과하는 사례 발생

※ 서울지점의 본지점 차입금이 서울지점 자기자본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에 대하여 지불하는 본지점 이자는 손금불산입

○ 동 초과 차입금에 대한 지불이자를 손금 처리할 수 없어 부담이 되고 있음

□ 관련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대한 법률 제14조

□ 요구사항

○ 현재 6배로 규정되어 있는 은행의 차입금 한도를 외화수요가 많은 시기는 10배로 상향조정하고 비수요 시기는 6배로 환원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

□ 정부 측 의견

○ 과소자본세제는 법 제정 목적 상 조세 회피를 위하여 자본출자 보다 자본차입에 의한 거래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임.

○ Credit Lyonnais은행의 고충 건의 경우 정황판단 보다는 법리해석에 의한 충실한 판단을 하려고 하였음.

○ 금일 제기된 과소자본세제에 대한 문제점은 재정경제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바, 중장기 정책과제로 검토하겠음.

□ 전문가 의견

○ 디지털 금융시대에 본지점 거래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 미국의 경우, 본점 차입금을 차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본금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등의 여타 방법으로 과세회피를 방지하고 있음.

○ 따라서 과소자본세제에 현실과 괴리된 조항이 있다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외국은행들의 영업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음. 즉,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외환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바, 불필요한 단기 외환의 도입을 억제하고 장기 도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외투기업의견

○ 관계 법 및 시행령 상의 본점의 개념에 대한 차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 필요(Credit Lyonnais은행의 고충처리 과정에서 旣 해결되었음).

○ 은행에 대한 과소자본세 적용의 문제점 지적, 즉 은행은 제조업과는 달리 자금의 차입대출이 본연의 업무인바 이를 자기자본의 6배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또한 은행의 자기자본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금감위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바 제조업과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함을 제기

○ 제3자 차입과 동일한 조건의 차입금일 경우(keeping an arm's length rate)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이라고 해도 제3자 차입과 동일하게 취급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 희망

3.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KIEP, 145 PAGE)

□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 투자기업은 장기적인 사업 확장 계획하에 사전에 충분한 토지 확보를 원하고 있으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취득세의 경우 5배 중과세)로 인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없음

□ 관련근거

○ 법인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4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 지방세법 제112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 요구사항

○ 외국인투자기업이 토지를 취득한 후 필요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득 및 보유시 중과세를 완화

○ 다만, 부동산 투기의 원래 목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분시 과세감면조치를 배제하는 것은 유지

○ 또는 공단지역 등 투기가 예상되지 않는 지역을 지정하여 중과세를 배제하는 등의 방안 검토

□ 전문가 의견

○ 법인세법 상으로는 사용유예기한연장, 융통성과 탄력성 부여 등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불이익이 많이 완화되었으나 지방세법은 아직 그대로 임.

○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 등 공업단지내의 경우 부동산투기목적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 탄력적(장기사업목적, 장기공장 건설계획에 밝혀진 범위 내라면 인정하는 방안)운용이 바람직함.

□ 정부측 의견

○ 현행 제도는 1998년도에 대폭적으로 완화시켰기 때문에 추가로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기준을 법인세법과 같이 5년으로 일치시키자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다만,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한정하여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또한 법에서 허용한다고 하는 사항도 모호한 것은 사례별로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함.

4. 종업원 대부에 관한 지불이자 손금 불산입(일, 37 PAGE)

□ 현황 및 문제점

○ 법인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자(종업원 포함)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지불한 가불금(주택구입대부금, 복리후생대부금 포함)의 경우 손금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 기업이 종업원의 복리 후생을 목적으로 한 주택 구입 대부나 일반 대부를 위한 대출을 할 경우 차입금금리(지불이자)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부담이 과중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이 종업원에게 부담하여야 할 복리후생비가 과다지출되고 있음.

○ 외국기업은 법인세법 동 조항은 그룹기업간 저리 대부나 일부 임원, 오너에 대한 저리대부 등을 과세할 목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나 일반 종업원까지 특수관계자로서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여기고 있음.

□ 관련근거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 요구사항

○ 일반종업원과 임원이나 오너를 구분하거나 한도액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

□ 전문가 의견

○ 1998년까지는 종업원을 위한 주택취득 및 임차자금에 대하여 일인당 2천만원까지 무이자대출이 가능하였고 세무상 혜택은 있었으나 이를 1999년부터 폐지하였음.

○ 여러 기업간 형평, 금융기관 등의 편중 적용사례 등 무제가 있었기 때문에 폐지하였으나 회사소유 사택 등에 대하여 비용인정 및 세무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과의 형평을 위하여 부활시킬 타당성이 높음.

5. 고정사업장에 대한 국세청의 자의적 해석(KIEF, 70 PAGE)

□ 현황 및 문제점

○ 외국법인의 국내영업활동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또는 사안별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음.

※ 서울에 지점을 두고 있는 스위스 무역회사가 독일 화학회사의 한국내 오퍼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음. 스위스 무역회사는 동 독일회사의 전직 직원들을 한국 내 화학제품 판매를 위해서 고용함. 한국 국세청은 이 종업원들이 여전히 독일 회사의 사실상 직원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동 독일회사가 한국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정하여 동 독일기업을 상대로 거액의 조세를 부과함.

□ 관련근거

○ 법인세법 제94조

□ 요구사항

○ 국세청에서는 현재 고정사업장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여러 조사·검토한 자료를 갖고 판단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함.

□ 전문가 의견

○ 이러한 국내사업장 매출액 전액 과세를 회피하려는 외국납세자의도를 견제하기 위하여 복합, 겸업 별도 대리점이라도 전속업무를 수행하면 각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실질적 기능범위와 업무성격의 사실판단문제는 있음.

6. 해외본사의 공통경비 증명시 불필요한 서류 요구(옴99, 31 PAGE)

□ 현황 및 문제점

○ 해외 본사 등에서 발생하는 공통경비(Management Fee)의 증명시 세무서는 본점 및 지역통합점의 조직도와 부서별 업무분장 규정, 공통경비 명세서 및 배분 계산서, 본점 및 지역통합점의 수입금액명세서 및 손익계산명세서, 외부 회계전문가의 확인서 등 까다로운 비용 안분계산 근거서류 제출을 요구

□ 관련근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

□ 요구사항

○ 일정 금액 한도 이내에서 증빙서류 면제 또는 서류 간소화

□ 전문가 의견

○ 실제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다고는 하나 간소화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하여는 많은 서류가 필요함.

○ 수입금액 대비 또는 국내관리비용 대비 몇 퍼센트까지는 인정해주는 것도 합리성 있으며 별도서류제출대신 상대국 공인회계사의 경비배분보고서로 대체하는 방안도 바람직함.

□ 정부측 의견

본점 소재국의 공인회계사 확인사항만 가지고 공통경비를 확인·수용하는 것은 어려움. 관련 지점의 경비배분 계산서를 위한 첨부서류만 제출하면 됨.

7. 이전가격 증명시 불필요한 서류 요구(옴99 31, 옴00 28 PAGE)

□ 현황 및 문제점

○ 해외의 자매회사와 본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와의 거래시 이전 가격에 대해 세무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산시에도 이전 가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 외국인 투자 증가로 특수관계 회사와의 거래가 급증하는 추세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국내사업장의 국내 본점 및 외국 본점의 다른 국내사업장 포함)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등 업무 부담 가중.

□ 관련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요구사항

○ 일정 금액 한도 이내에서 증빙서류 면제 또는 서류 간소화

□ 전문가 의견

○ 이전가격에 대하여는 각국별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임.

□ 정부측 의견

본점 공통경비 배분에 대한 자료제출과 마찬가지로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였음.

8.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감면 판단기준이 자의적(옴00, 28 PAGE)

□ 현황 및 문제점

○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근로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음.

○ 근로 소득세 면제가 가능한 외국인은 특정분야에 5년 이상 종사 또는 학사학위 이상 자로 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이 모호함.

○ 즉, 법규상 업종 및 업무 형태별 근무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분야별 근무기간 해당 여부가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요구사항

○ 객관적인 경력산정 기준을 정하도록 현행제도 개선

□ 전문가 의견

○ 일반적으로 내국인은 외국인기술자의 국내 유치시 그 업무에 대한 보수를 순액으로 지급하며, 외국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국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맺고 있음.

○ 외국인기술자 유치를 위하여 근로소득세 면제혜택을 주는 것은 결국 국내기업의 급여부담을 줄여주는 국내기업 지원규정이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외국인기술자이면서 경영자인 경우에도 기술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혜택을 부여함이 바람직함.

□ 정부측 의견

○ 5년간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기술자의 기술자격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잘 명시되어 있으며 감면제도의 취지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을 두어야 하며 확대 운영되어서는 안됨.

○ 그러나 기술자의 범위가 기술 및 경영을 같이하는 외국인으로 확대하기 위하여는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함.

9. 스톡옵션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국내 기업만 적용(AM)

□ 현황 및 문제점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 외국기업 지사의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니므로 종업원에 대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더라도 국내기업과 동일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함.

○ 따라서, 외국기업은 국내 기업에 비하여 불평등한 조건에서 인력 확보 경쟁을 하고 있음.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요구사항

○ 외국기업의 여건을 감안하여 외국지사의 본부로부터 받는 스톡옵션에 대하여도 동일한 혜택 부여

□ 전문가 의견

○ 벤처기업, 기술법인, 상장법인, 코스닥법인 외의 다른 법인도 산업활성화, 기술개발, 고용촉진의미는 있음.

○ 내외국인 형평대우 및 법인간 동등조건 부여라는 차원에서 외국기업도 해당됨이 타당함.

10. 외국인 전문인력의 소득세 부담

□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거주자는 최고 40%까지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

<종합소득세 과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4천만원	10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8천만원	7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 초과	1천90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홍콩의 경우 소득세율이 최고 20%임. 이에 비해 우수한 외국인력 및 CEO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다국적 기업의 CEO는 홍콩, 싱가포르 등에 상주하고 있음.

□ 관련근거

○ 소득세법 제55조

□ 요구사항

○ 고도기술수반사업 인정기업 등 일정 기준 이상의 기업의 CEO 등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신축적 운용

□ 전문가 의견

○ 현행 규정은 기술자가 아닌 일반경영자, 관리 및 영업분야 경영 CEO 등은 해당되지 않음. 감면혜택을 줄 경우 국내기업 경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11. 조세감면신청기한 경과후 조세감면신청 불가

□ 현황 및 문제점

○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하여야 하나, 종료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구제방법이 없음.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요구사항

ㅇ 신청기한이 경과하여도 추후에 감면대상임을 인지하는 경우 신청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

□ 전문가 의견

ㅇ 기업이 잘 몰라서 기한이 경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적법기한 내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적용하는 것이 타당성 있음.

ㅇ 외국인 투자 기업은 외관상 명확히 감면대상 여부가 파악되므로 사전신청요건이 필요 없는 비과세와 같은 차원에서 당연 감면 사유를 구비했다고도 볼 수 있음.

□ 정부측 의견

조세감면 신청기한이 경과한 경우는 대부분 11월이나 12월에 법인 설립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나 조세감면 대상임을 모르다가 다른 업체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경우로 당연히 신청할 사안인데, 이해 부족 또는 촉박한 시간 등으로 못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이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시 동시에 조세감면신청이 되도록 양식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함.

관세·통관	11 건

1. 일부제품에 높은 수입 관세(KIEP, 130 PAGE)

□ 현황 및 문제점

○ 설탕(50%), 쇠고기(최고 42%), 오렌지쥬스(최고 57%), 대두(509%) 및 참기름(665%) 등과 같은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호텔, 외국 음식점 등 다양한 재료를 수입하여야 하는 음식점 의 경우 높은 관세가 원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관련 근거

○ 관세법

□ 요구 사항

○ 수입관세의 인하

□ 전문가 의견

○ 설탕에는 기본관세율, 쇠고기 및 오렌지 쥬스에는 양허관세율이, 대두에는 특별긴급관세율(2000.12.31)이 각각 적용되고 있음.

○ 쇠고기, 오렌지쥬스, 대두 및 참기름 등과 같은 농축산물의 경우, 국내 생산 농가 및 축산업자의 보호라는 상반된 이익에 대한 고려를 무시할 수 없음.

○ 국내 생산자의 산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 및 위험, 그리고 WTO 다자간 차원에서의 관세협상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된 후, 관세인하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ㅇ 다만, 설탕의 경우 국내 사탕수수 생산 농가가 없는 점 및 수입원료에의 의존이 높은 품목임을 감안할 때, 관세인하를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어 보임.

2. 한글표시 식품만 통관 가능(KIEP, 130/김민석, 33 PAGE)

□ 현황 및 문제점

ㅇ 식품 수입시 포장용기에 한글표시가 있는 식품만 통관 가능하며 상표의 경우만 동일한 크기로 국문 · 영문 혼용이 가능함.

ㅇ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외국어 표기만 하는 것은 불가

ㅇ 포장용기에 별도로 한글표시 라벨링을 함에 따라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

□ 관련 근거

ㅇ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6조, 시행규칙 제11조, 통합공고 2000-23

□ 요구 사항

ㅇ 소비자 건강 및 안전에 관련된 내용만 한글로 표시하도록하고, 제품명 등에 대해서는 본국 언어표시를 허용

□ 전문가 의견

ㅇ 수입 식품에 자국어 표시 라벨링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보호라는 측면에서의 입장이 강하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로 조사되고 있음.

ㅇ 그러나, 소비자건강 및 안전 등에 대해서는 한글표시를 하고, 제품명 등에 대해서는 본국 언어표시를 허용해달라는 주장에도 타당성이 있어 보임.

ㅇ 따라서 현재 상표에 있어 한글과 본국어 혼용표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 걸음 더 나아가 표기상대국에서도 한글표시를 인정해주는 경우 우리도 본국언어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주의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식품수입시 수입 제한(KIEP, 130 PAGE)

□ 현황 및 문제점

ㅇ 생과실, 열매채소의 생과실, 콩과식물의 풋콩류 등에 대하여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로 부터의 수입만 허용하고 이를 제외한 세계 전 지역에서의 수입을 제한

ㅇ Positive List상 수입 가능한 지역이외의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불가능하도록 한 규제로 인해 국내 호텔들이 정상적 공급자로부터 신선하고 값싼 제품을 수입할 수 없음.

- 연변산 배, 호주산 캥거루고기, 남아프리카산 오랜지등은 수입 불가

□ 관련 근거

ㅇ 식물방역법 제7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조, 통합공고 제2000-23호

□ 요구 사항

ㅇ Negative List로 바꾸고 사후 검역 확인

□ 전문가 의견

ㅇ 수입 가능한 지역을 Positive List로 관리함에 따른 수입가격 및 신선도 유지관리비 상승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현행의 수입 가능한 Positive List에 의한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를 제외하고, 이를 Negative List에 의한 관리로 전환하되 검역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식품가공을 위한 제품원료 및 착색물질 수입제한(KIEP, 67, 117 PAGE)

□ 현황 및 문제점

○ 수입 가능한 제품원료 착색물질이 Positive List로 규정되어 있어, 외국에서는 사용 가능한 원료라도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통관할 수 없음.

○ 새로운 착색물질의 경우 심사과정을 통해 '식품일반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규제를 개정함으로써 허용될 수 있으나, 그 처리에 6개월이 소요되고 있음.

□ 관련 근거

○ 식품위생법 제3조 제1항, 제12조, 식약청 고시 제98-58호

□ 요구 사항

○ 제품 원료 및 착색물질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확인된 물질 이외에 외국공인기관에서 인정하여 통용되는 물질에 대하여는 통관 자유화

□전문가 의견

○ Positive List에 의한 관리가 불가피한 명백한 사유가 달리 없는 한, 이를 Negative List에 의한 관리로 전환할 것을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임.

○ 다만, 상술한 제품원료 및 착색물질의 심사에 관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경우, 외국공인기관을 어떤 기관으로 할 것인지의 기준과, 상호주의적인 차원에서의 검토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5. 우수한 수입업체에 대한 통관 우대조치 부재(KIEP, 131, 66 PAGE)

□ 현황 및 문제점

○ 수입되는 모든 과일·채소류에 대해 검사(1~6주 소요)함에 따른 통관 지연으로 신선도 유지가 어려우며

○ 선진국의 경우 선통관 후 사후 검역을 하고, 통관에 과도한 기간이 소요되지 않음.

○ 미국은 일정기간 통관 위반사항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유통관을 적용하는 "honor system"이 활성화됨.

□ 관련 근거

○ 식품위생법 제16조, 시행규칙 제11조

□ 요구 사항

○ 일정 기간 동안 통관 위반 사항이 없는 기업에 대하여 통관검사를 생략하는 "honor system" 활성화

□ 전문가 의견

○ 농산물의 통관검사는 다른 국가들과의 통상마찰이 제기된 전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입 농산물의 통관검사 방법에 대한 합리적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통관 우대제도의 실시는 통상마찰의 사전적 해소 및 통관행정의 효율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반면, 수입 농산물의 검역에 대한 문제점이 동시에 상존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보호측면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우선적으로 마련된 후 실시되어야 할 것임.

6. 복잡한 관세 체계(옴99, 31 PAGE)

□ 현황 및 문제점

○ 관세법 관련 법규 및 행정 규칙 체계가 복잡하여 외국인의 경우 업무 파악이 어렵워 수출입시 애로요인으로 작용

□ 관련 근거

○ 관세법, 대외무역법, 국세징수법 등

□ 요구 사항

○ 중복적인 행정 규칙은 통폐합 또는 폐지

○ 상담 전문요원 양성 및 무료전화 개설 상담센터 운영

□ 전문가 의견

○ 현행 관세법구조는 포괄된 단일법 형태로써 법체계가 매우 방대함. 더욱이 국내외 경제현상의 세분화·복잡화로 인해 관세법의 내용이 점차 전문성과 복잡성을 띠게되어 관세행정 수요자들 뿐만아니라 관세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조차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난해한 조문이 많음.

○ 입법 체계상 큰 문제가 없다면 외국기업인들은 물론 국내 수출입기업들의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관세관련 법령을 보다 합리화·투명화·단순화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법령의 하위체계인 각종 규칙, 고시, 훈령, 예규, 지시 등의 관련 사항 중 중복적인 규정들도 통폐합을 통해서 단순화시키는 것도 신중히 고려할 만한 사항으로 판단됨.

7. 수입통관시 EDI 제도 적용이 일부 업체에 제한(옴99, 31 PAGE)

□ 현황 및 문제점

○ 수입 통관시 동일한 서류를 매번 제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은 성실 신고 업체 및 외국인투자기업 중 신고 정확도가 검증된 일부 업체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음.

○ 현재 약 천여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수입업체의 인력·시간·물류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한 서류없는 수입통관제도의 조속한 확대 실시가 필요.

□ 요구 사항

○ 수입 EDI(Eletric Data Interchange) 제도 조기 확대 필요

□ 전문가 의견

○ 현재 관세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분야임.

○ 다만, 2000년중 전체 수입신고분의 30%를 P/L방식의 수입통관제도를 활용하려는 계획을 좀더 확대 실시하고, 모든 세관장확인대상기관의 추천 및 확인이 EDI System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요망됨.

8. HS 변경에 따른 관세 추가 징수시 수출입신고자의 소명기회 부재 (옴99, 31. 옴00, 34 PAGE)

□ 현황 및 문제점

○ 관세법 제17조에 따라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동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심사하고 있음. 또한 징수한 관세의 금액이 부족이 있음을 알았을 때 그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

○ 품목 분류 사무 처리 규정에 따르면 기존 품목 분류에 대해서는 세관 공무원이 분류를 하고 변경시에는 다음의 일련의 절차를 거침.

※ 세관분석실→세관협의회→본부세관 및 관세중앙분석소 품목분류협의회→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위원회→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

○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HS 분류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전에 품목분류위원회에 수입업자가 소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지지 않고 있음.

□ 관련 근거

○ 품목 분류 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7조

□ 요구 사항

○ 품목 분류 변경시 사전에 수입자가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전문가 의견

○ 품목 분류의 변경에 관한 결정은 해당 품목을 거래하는 수출입기업에게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임.

○ 따라서, 이해 관계인들로 하여금 당해 절차 과정에 있어 제도적으로 최소 1회 정도는 소명할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만아니라, 품목분류와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나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9. ITA품목(트랜지스터, 다이오오드 등)과 부품간의 역관세 (옴99, 31 PAGE)

□ 현황 및 문제점

○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협정에 따라 관세면제 품목인 Transister, Led, Diode 등에 대한 수입관세는 면제받고 있으나, 이들 부품을 제조하기 위한 각종의 원부자재(EPOXY RESIN, GLASS TUBE, DIFFUSING TUBE 등) 들은 기본관세율(8%)을 적용받고 있어 국내 투자희망업체의 투자여건이 미비함.

□ 관련 근거

○ 관세법

□ 요구 사항

○ 국내 부품산업 육성 및 외국인투자기업 제조 독려를 위한 관세율 조정

□ 전문가 의견

○ 원칙적으로 제1차 ITA협정 적용 대상 품목의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율을 조정해 줄 의무는 없으나 이들 품목을 제조,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추가 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부품의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율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이러한 관세율 조정은 ITA 적용품목을 생산하는 국내업체의 가격 경쟁력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나, 이들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국내업체에서는 산업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음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10. 전기용품 안전검사시 비용 부담 과다(AM, 옴99, 32 PAGE)

□ 현황 및 문제점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에서 제조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통관전에 안전인증을 위한 시험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서 국문서류로 번역을 해야 하는 등 많은 비용과 장시간 소요

ㅇ 또한,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 안전인증을 받기 않아도 되나, 실지 사용품이 아닌 샘플을 국내에 소개용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거쳐야 함

□ 관련 근거

ㅇ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3조

□ 요구 사항

ㅇ 수입제품안전검사시 비용 절감 및 절차간소화

ㅇ 샘플로 입증(1개)되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검사를 면제

□ 전문가 의견

ㅇ 안전 검사는 당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나,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 문제는 모든 수입자의 관심사항임.

ㅇ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에 있어 규제개혁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기존의 법제도 및 정책의 근본적인 존치 실익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애로간의 비교형량이 필요함.

○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상대국과의 상호주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11. 화장품 샘플 수입시 국문 표기 요구(EU, 75 PAGE)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모든 수입 화장품의 샘플에는 국문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샘플은 비매품으로서 전시 및 샘플로만 사용되며 고객을 상대하는 상담원만이 배포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샘플에는 상표 부착 공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한글 스티커를 부착하기 어려움.

○ EU회원국에서 유통되는 유럽 화장품 샘플에는 회원국 자국어로 된 상표가 부착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는 2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화장품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국문표기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음.

□ 관련 근거

○ 약사법 제76조, 수입의약품 관리 규정 제19조
○ 화장품법 제10조

□ 요구 사항

○ 샘플인 경우 한글 스티커 부착을 면제

□ 전문가 의견

○ 샘플은 견본으로서 그 자체가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을 뿐

만 아니라, 한글표기 스티커의 추가 부착이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화장품 샘플에 대해서는 국문 스티커의 부착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이는 상대국과의 상호주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노 무	10 건

1. 정리해고 요건(KIEP, 117 PAGE)

□ 현황 및 문제점

○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함. 외국인 투자자들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규정이 모호하고 실제 파산의 위기에 닥쳐야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

○ 정부의 행정목적을 위해 사용자는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신고를 하여야 함.

□ 관련 근거

○ 근로기준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조

□ 요구 사항

○ 정리해고의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 또한 기업이 경쟁력 확보와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을 실시하다가 대외 노출로 인해 파산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사전 신고 요건을 사후 신고로 대체

□ 전문가 의견

○ 우리나라의 정리해고 요건은 이미 여러 판례로 정립되어 온 것을 법으로 규정하였으며, 법 규정이 모호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사전 신고를 사후신고로 하고 있는 국가는 없음.

2. 법정 퇴직금제도(일, KIEP, 140 PAGE)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퇴직금 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무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어 기업의 비용부담 가중

□ 관련 근거

○ 근로기준법 제34조

□ 요구 사항

○ 퇴직금 제도를 법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노사간 계약에 의해 시행

□ 전문가 의견

○ 퇴직금 제도의 변경 또는 폐지는 사회 전반적인 사회보장 체계의 발달과 함께 논의되어져야 함.

3. 연·월차휴가, 생리휴가제도(일, KIEP, 140 PAGE)

□ 현황 및 문제점

○ 연·월차 휴가제도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해야하므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

○ 여성근로자에 대한 유급생리휴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서 당초 여성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취지와는 달리 여성고용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

□ 관련 근거

○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 제71조

□ 요구 사항

○ 연·월차 휴가 및 생리휴가제도를 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노사간 계약에 의해 시행

4. 여성근로자의 시간외 근무 제한(일, 10 PAGE)

□ 현황 및 문제점

○ 사용자는 근로 기준법에 따라 18세 이상의 여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를 시키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여성근로자에게만 시간외 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의 이념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 관련 근거

○ 근로기준법 제69조

□ 요구 사항

○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무 제한을 노사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전문가 의견

○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현재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는 여성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확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영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게 됨.

5. 근로자 파견업 관련 규제(KIEP, 137 PAGE)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한 헤드헌팅 사업 등 근로자 파견업의 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허가 이후에도 소개요금의 상한선(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20% 이내로 소개요금 규정) 등 지키기 힘든 준수 사항을 규정하여 진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규제집행에 따른 비리 가능성 상존

□ 관련 근거

○ 직업안정법 제19조, 시행령 제21조,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고시 (노동부 고시 제1995-35호)

□ 요구 사항

○ 근로자 파견업의 허가 요건 및 소개요금 상한선의 완화

□ 전문가 의견

○ 파견근로자 관련 법은 합법화 당시부터 노사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이었음. 유럽의 경우 규제하는 것이 일반적임.
- 파견 기간의 제한 및 헤드헌터의 경우 알선료의 상한선 등

6. 외국인 산업연수생 고용 인원의 제한(KIEP, 84 PAGE)

□ 현황 및 문제점

○ 일반기업체의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고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외국인 인력 공급 기관과 협의하여 교육생을 받은 후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바대로 인력을 배분하고 있음.

○ 인력 배분시 외국인의 수를 기업 규모(생산직의 상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일괄적 제한함에 따라 중소기업과 하이테크 기업을 차별화하지 못하고 있음.

※ 301인 이상 500인 이하는 40명 이내, 501인 이상은 50명 이내 등

□ 관련 근거

○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에 관한 지침(중소기업청고시제2000-5호)

□ 요구 사항

○ 기업규모와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에 대한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신축적 운용

7. 보훈 대상자의 고용명령제도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보훈처는 국가 유공자의 취업을 위하여 기업에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기업에 고용을 명령할 수 있음.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고용 명령시 근무자의 근무지 부서까지 지정하는 경우가 있음.

○ 또한, 일단 취업이 된 피고용인이 자질이나 능력이 업무에 맞지 않을 경우 이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사무직이 극히 소규모인 회사의 경우 의무고용 대상자를 사무직으로 강제하는 경우 회사 인력이 어려움.

□ 관련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 외투기업 요구 사항

○ 고용을 이행하는 대신 '국가유공자취업보호기금' 납부 등 제도의 탄력적 운영 필요하며 유자녀에 국비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데 취업까지

알선한다면 국민의 이중부담을 지우게 되는 것임.

ㅇ 고용명령시 대상자를 복수 추천하여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전문가 의견

ㅇ 어느 나라나 장애인의 유공자 등에 대한 처우와 고용증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나, 강제적인 고용 명령 제도 대신 기금의 납부를 통해 법적 의무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단 이 경우 기금의 활용을 통해 실제로 고용 효과가 달성될 수 있는 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정부측 의견

ㅇ 최근 보훈지청에 국내 사정에 익숙지 못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충분히 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하고 무리하게 채용을 강제하지 말도록 하라는 요지의 공문을 시달한바 있음.

ㅇ 부담금 납부를 통하여 기금이 조성되더라도 현실적으로 기금의 사용처를 찾기가 어려우며 아울러 보훈대상자의 취업이 곤란해지는 문제점이 있음.

□ 결론

ㅇ 규제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가 명령제도이며 제도가 62년부터 도입된 후 시대적 상황이 많이 변하였음에도 종전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ㅇ 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은 학문적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슈화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으며, 피해를 입은 외투기업은 헌법소원도 고려해 볼만한 사안임.

ㅇ 단기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취업 수요의 전산화로 인력수급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해당기업에 강제고용으로

생산성 저하가 된 부분은 기금으로 보조해주는 것도 바람직함.

8. 용역사 노조의 모 회사 명칭 사용

□ 현황 및 문제점

○ 용역회사 노조의 경우 母회사 명칭을 사용하여 노조 설립 신고할 경우 조합원들의 소속이 母회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 회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그러나 이러한 경우 현재 행정 지침이 명확히 없음.

□ 관련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0조, 11조, 12조

□ 외투기업 요구 사항

○ 용역회사는 모회사와는 별도이므로 노조명칭에서 모회사 상호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함.

□ 전문가 의견

○ 처음 노조 설립시 행정관청에서 행정지도해야 함.

□ 정부측 의견

○ 과거에는 법에 하라는 규정이 없으면 안 했고, 지금은 법에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으면 해야 함.

○ '97년 노동법 개정 이후 노조 설립신고시 보완,시정명령 및 반려가 과거의 1/3로 축소되었음.

9. 단체교섭 대상

□ 현황 및 문제점

○ 인사·경영권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에 대한 노사간 주장 불일치
- 인사·경영권에 대한 주장으로써 노사 공히 헌법 제23조(*)를 인용하여 각자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
- 대법 판례 또한 각 상황에 따라 인사 경영권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인정 또는 불인정

(*) 헌법 제23조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노동부 행정해석은 노조의 인사·경영권 요구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으며(1995.5.13. 노조 01254-548), 인사·경영권은 사용자의 권능으로 인정된다고(1997. 5. 16, 노조01254-445) 유권해석 하고 있으나 구속력은 없음.

□ 관련 근거

○ 노동부 행정 해석(노조 01254-548, 1995.5.13 및 노조01254-445, 1997.5.16)

□ 외투기업의 요구 사항

○ 인사·경영권 요구에 대한 노조의 요구는 불합리함을 명확화.
○ 노동부에 질의시 신속한 회신을 당부함.

□ 전문가 의견

○ 질의한 것에 대하여 홈페이지 활용 등으로 신속히 회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행정 해석은 어디까지나 행정해석일 뿐이며 추 후 사법부 판결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의존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함.

□ 정부측 의견

○ 노조가 인사경영권을 교섭대상으로 요구하여 이를 이유로 파업하는 것은 불법파업이며, 지점장 해고 요구 또는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를 요구하여 파업하는 것은 불법임.

○ '97년 법개정 이후 유급 전임자 요구는 불법이며, 무급 전임자 설정은 노사 자율임.

○ 표준 단체협약안을 만드는 것은 곤란하며, 현재 전경련, 경총 등에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팀장의 조합원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시는 조합원 가능 여부에 대해 해당 행정관청이 그 회사 규정 등을 실사하여 그 팀장이 사용자 성격이 강한지, 근로자 성격이 강한지 사실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10. 노사분규와 제3자 개입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옴부즈만 사무소에 단체협약 검토 요청(검토 결과서를 노조에 제시하여 설득하고자 함)
- 제3자 개입에 해당되어 검토 유보
- 노동부에 질의(옴부즈만 사무소는 노동쟁의 지원에 있어서 법적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 옴부즈만 사무소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서 제외된다는 회신을 받음(단 공인노무사 홈닥터 제외)
- 노사조정담당관실

○ 노사간 분쟁에는 공적 조정 또는 중재인 및 노사 쌍방이 합의하여 선임한 사적 중재를 제외하고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고 자주적 해결을 강조하여 노사분규 해결이 지연됨.

□ 관련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법 제47조, 제48조, 52조, 제53조 및 제62조

□ 외투기업 요구 사항

○ 옴부즈만 사무소가 제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단체협약을 검토하여 주기를 희망함.

□ 전문가 의견

○ 제 3자 개입 금지 조항이 97년 법 개정 이후 과거보다는 대폭 완화되었으며, 제 3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되었음.

□ 정부측 의견

○ 제 3자 개입 금지 조항의 완전 폐지는 곤란함.
○ 노동위원회가 결론까지 내리는 공적 조정은 불가함.
○ 단체교섭 전과 후에는 제 3자 개입이 아님.

건 설	8 건

1. 용도 변경시 경비와 시간 과다 소요(KIEP, 81 PAGE)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법상 토지이용과 관련한 법률은 모두 91개이며, 이 중 토지이용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51개,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40개임.

○ 토지 이용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51개의 법률 중 지역·지구·구역 등을 지정하여 행위제한을 가하는 법률이 49개, 인·허가 절차를 통해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법률이 2개임.

○ 현행 법제상 지역·지구·구역은 지나치게 복잡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 오랜 시간과 많은 행정적 비용이 소요

□ 관련 근거

○ 국토이용관리법 등

□ 요구 사항

○ 복잡한 현행 토지 이용 규제를 체계화하고 투명화

□ 전문가 의견

○ 국토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해 전체적으로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고, 이에 따라 도시계획지역은 도시계획법과 도시개발법에 의해,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곳은 국토이용관리법 의한 적용을 받고, 또한 수도권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보다 강화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밖에 개별법에 의한 토지에 대한 수많은 규제가 있어 일반인의 이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의 어려움이 있음은 사실임.

○ 현실에 있어서 토지를 사용하고자하는 업체가 용도에 적절한 토지를 구입하여 사업을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도시계획변경이나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통해 해당용도에 적절한 용도로 변경을 해야하나 이에 대한 입안권자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어 그 절차의 어려움과 과정에서 투명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새로운 법률에 주민제안제도가 도시계획지역에 채택되어 시행이 예정되어있으나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곳은 적용되지 않는바 이에 대한 동일한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 수도권공장 신·증설시 면적 제한(옴/지자체)

□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 지역내 공장 신설 및 증설의 허가 면적 제한으로 적정 규모의 생산 면적을 확보하기 곤란
- 과밀억제지역 : 7개 업종은 공장부지내 증설가능, 3개 업종은 신·증 불가
- 성장관리지역 : 10개 업종에 대하여 최대 50%까지 증설 불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투기업은 20개 업종까지 가능
- 자연보전지역 : 중소기업의 경우 3천㎡이내 증설, 1천㎡이내 신설 가능

○ 공배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외국인투자지분 51% 이상인 20개 첨단업종만 수도권성장관리권역내 대기업 신·증설 가능

□ 관련 근거

○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7조 및 부칙

□ 요구 사항

○ 공장의 신·증설 허용업종 및 허용 면적 확대 수도권 지역내 공장 신설 및 증설의 허가 면적 제한

□ 전문가 의견

○ 수도권내의 공장 신·증설은 상기의 관련 근거 및 공장건축총량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바, 이에 관련한 업계의 고충이 많으며, 최근 5월 10일 발표에 의하면 금년 경기지역 공장건축총량 222만8천㎡ 가운데 213만7천㎡을 이미 집행, 일부 자치단체에서 공장건축허가가 유보되고 있음.

○ 수도권 지역내 공장 신설 및 증설의 허가 면적 제한은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논란은 수년간 계속되어온 바, 국익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될 사안임.

3. 건축 설계업 진입 제한(KIEP, 135 PAGE)

□ 현황 및 문제점

○ 건축설계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호를 "건축사사무소"로 하고, 그 대표자는 건축사로 한정하고 있어 건축 설계업 진입을 사실상 규제

○ 건설회사 소속 건축사가 일반 건축물을 설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형 건설회사에서는 별도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회계처리 비용 등 비용부담이 가중

○ 특히 자기업무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공업체 소속 건축사의 설계업무를 허용키로 의결(97.8.27, 규제개혁추진회의)하였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음.

□ 관련 근거

○ 건축사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 요구 사항

○ 자기업무용 건축물에 대하여 시공업체 소속 건축사의 설계 허용 등 공업체 소속 건축사 업무의 점진적 확대

□ 전문가 의견

ㅇ 건축사법 제23조 2항에 의해 건설회사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도 었을 경우 소속건축사에 의해 건설교통부령에 정하는 특수건축물만을 설계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금년 3월29일 건교부 의하면 건설회사가 '자가 업무용 건축물'에 한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 건설회사 소속의 건축사업무가 확대되고 있음.

ㅇ 실제에 있어서는 일부 건설회사는 설계사무소를 별도 법인으로 두어 운영하기도 함.

4. 공공기관 사업시 국산품 자재사용 요구(김민석, 50 PAGE)

□ 현황 및 문제점

ㅇ 공공 입찰시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사용하고 있음. 사용되는 제품에 대하여 외국의 경우 시방서에 기재하되 도면에 표기될 수 없는 사항을 기지하고 가능한한 제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기재하더라도 '이에 합당한 제품' 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임.

ㅇ 공공기관 공사 입찰시 국산품 사용을 요구
- 한국도로공사가 펴낸 입찰에 관한 '현장지침서(98.4)'에는 "시공상 유의사항"에 "공사용 주요자재 중 광케이블에 대하여 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국산품으로서 공사입찰일 현재 국내기간통신사업자(KT, 데이콤)의 품질인증제품"으로 입찰참여를 외국업체에 제한.

ㅇ 공공사업 발주에서 특정자재를 '품질인증제품' 차원이 아니라 '국산품'으로 명시적 제한하는 것은 외국기업차별임.

□ 요구 사항

ㅇ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행정지도

□ 전문가 의견

ㅇ 공공기관사업시 국산품자재 사용은 외국에서도 공공연히 있는 바이나 이를 입찰서류에 명기해서는 안되고, 필요시 시방서에 기술적으로 기입하는 방법으로 통상마찰을 피해야 함.

5. 최저가 위주 낙찰제도 운영으로 기술력이 우월한 외투 기업 불리 (김민석, 50 PAGE)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①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②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③ 기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감안하여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함.

ㅇ 건설공사 낙찰시 품질·시공능력 보다 가격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우선되는 관행으로 기술력이 우위에 있는 기업 불리

□ 관련 근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 요구 사항

ㅇ 낙찰 하한선을 상향조정 및 기술력과 재무 건전성을 갖춘 업체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전문가 의견

ㅇ 현행의 공공공사입찰제도는 외국건설업체뿐만 아니라 기술력 있고 경

영이 건실한 국내업체도 낙찰 받기 어려우며, 이 문제점은 정부에서도 익히 알고 있는 것으로, 특히 건설업에 대한 문제의 해결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반에 걸친 발전이 필요함.

○ 공공건설에 있어 CM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시범적으로 외국업체에 맡기어 시행하고 점차 범위를 넓혀 국내건설업에 발전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CM이 공사에 추가 부담이라는 발주자인 공무원들의 인식을 불식시켜야 함.

○ 건설업에서의 공공공사입찰제도의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며, 현재의 건설업제도는 각 수많은 공종별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세분화 되어있어 이를 통합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감리·감독이 나누어져있어 부실공사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니 관리책임을 하나로 묶어야 함.

○ 각국의 공공입찰제도는 고유의 특색이 있으며, 국내의 입찰제도는 입찰과정에서 잡음이 없이 수행하는 형평성위주로 되어있으며, 또한 정부에서도 건설업에 관련해서는 건교부, 정부계약제도는 재경부, 입찰시행은 조달청으로 3원화 되어있고, 공공건설입찰제도는 건교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 금년 4월 '건설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준비하여 개선하여 금년 말 시행될 예정임.

6. 건설업·감리업 허가시 불필요한 서류 요구(AM)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등기부등본,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공 사용 시설 현황을 기재한 서류, 건설공사용 장비현황,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건설기술 관리법에 따라 감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건설기술인력 현황, 정관 및 등기부등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장비 보유 서류, 건축사면허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건설업과 감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수백 페이지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등 행정비용 부담이 가중

□ 관련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 요구 사항

○ 건설업 및 감리업 허가시 절차 간소화

□ 전문가 의견

○ 건설업의 면허제도는 국내와 일본만이 시행되고 있는데 외국건설업체의 경우 이 면허제도 자체에 대해 거부감이 있고, 사실 건설업 면허기준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일반건설업 5종, 전문건설업 29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이에 따른 기술자, 자본금 및 시설·장비의 기준이 있고, 감리업의 경우 등록기준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해 있는바, 이 기준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약 10종정도가 있고 각각에 첨부되는 서류를 합하면 위의 현황 및 문제점에서 지적하였듯이 수백페이지에 달하기도 함.

○ 건설업면허의 경우 과거에 비해 면허발급이 많이 완화되고 현재의 약 10종의 서류가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으나, 세분화된 면허의 종류를 단순화하고 회사재정과 관련된 서류는 없애며, 점차적으로 면허제도가 없는 외국의 경우를 지향해야함.

7. PQ 심사시 기술력 평가 미흡(AM)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 공사 발주시 입찰실시 전에 미리 참가자격을 심사하여 일정 점수를 충족하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입찰자격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Pre-Qualification)을 시행하고 있음.
- 대상공사 : 100억원 이상의 교량·댐 등
- 심사기준 : 시공경험(30점), 기술능력(35점), 경영상태(35점), 신인도(±10점)

※PQ 점수는 최종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 심사시에 반영

○ 현재 대부분의 국내 입찰 참여 업체가 신인도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어 기술력이나 경영상태 등에 대한 변별력이 없음.

□ 관련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시행규칙 제47조

□ 요구 사항

○ PQ 심사시 만점이상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신인도(우수건설업자·재해율 등) 비중 축소

○ 공사 종류(도로·항만·지하철 등)별 평가를 강화하여 전문화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재무구조·수익성 등 경영 상태에 대한 평가 합리화

□ 전문가 의견

○ 현행 PQ제도는 우수한 기술과 재무구조를 가진 업체가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은 여건이 사실상 배제되어 있는 바, 상기의 요구 사항을 포함한 이에 대한 문제점을 건교부에서도 깊이 인식하고 '건설산업 구조

개편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에는 어려움이 있음.

○ 그러나 PQ심사의 변별력을 강화, 우수한 기술을 가진 업체가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종류별 다양한 평가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전체 건설업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각 공사에 적절한 업체가 선정되는 자료로 이용되어야 함.

8. 건축사업 진입 제한(KIEP, 135 PAGE)

□ 현황 및 문제점

○ 건축사가 되고자하는 자는 건축사 시험에 합격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하며,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취득한 자는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건축설계과목만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외국 건축사 면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관련 근거

○ 건축사법 제7조, 제14조

□ 요구 사항

○ 외국 건축사 면허를 가지고, 일정기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건축사에 건축사 자격을 부여

□ 전문가 의견

○ 건축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외국 건축사 면허를 가진 자가 국내 건축사자격을 취득하고자할 시 건축사자격시험 과목인 건축법규·건축설

계 중 건축법규만 통과하면 되는바, 건축법규는 국가에 따라 다르고, 건축법규는 건축사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 적이어서 이에 대한 지식의 습득은 당연한 것이며, 또한 5년의 실무경력은 국내 건축사취득 응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음.

○ 또한 한국어를 모르는 경우 국내 건축사 자격의 취득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나, 건축사법 제23조3항에 따라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임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어, 이에 따라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음.

마케팅·물류	6 건

1. 관리대상화물제도의 자의적 운영(김민석, 37 PAGE)

□ 현황 및 문제점

○ 세관이 직권으로 수입상품을 관리대상화물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화물은 지정 보세장치장 창고에 입고되어야 함.

○ 지정 보세장치장은 창고영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 영업용보세장치장에 비해 환경이 열악함.

○ 보세 운송후 수입업자가 원하는 내륙지 세관에서 화물을 감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자가 원하지 않는 장소로 화물이 입고되어 불필요한 비용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음.

□ 관련 근거

○ 관세법 제45조,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절 제4-1-2조

□ 요구 사항

○ 수입물품이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는 경우 보세운송후 수입업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검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2. 화장품 광고 개선(EU, 79PAGE)

□ 현황 및 문제점

○ 화장품은 약사법을 적용받아 광고를 규제 받고 있으며, 각종의 광고가 약사법에 의해 "과장" 또는 "허위"광고로 되어 있음.

ㅇ 화장품은 특성상 의약품과 다르므로 제조업체가 제품의 효과에 대하여 광고를 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소비 욕구를 유발시킬 수 없음.

ㅇ 보건복지부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화장품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광고의 범위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음.

□ 관련 근거

ㅇ 약사법 제63조, 시행규칙 제79조
ㅇ 화장품법 제12조

□ 요구 사항

ㅇ 화장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광고의 범위 확대

3. 방송광고의 사용언어 규제(AM, 일 53PAGE)

□ 현황 및 문제점

ㅇ 방송광고에 있어서 외국어(영어 등)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음.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간단한 외국어가 신문·잡지에서 규제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만 규제하고 있음.

□ 관련 근거

ㅇ 방송법제20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9조, 제89조, 제90조

□ 요구 사항

ㅇ 광고효과를 고려하여 광고주가 사용 언어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4. 인천국제공항의 지상취급을 한국업체 독점(EU, 107PAGE)

□ 현황 및 문제점

○ 인천 국제공항 화물의 지상취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국내 운송업체에 제한되어 있음.

○ 유럽의 운송업체가 창고시설을 지니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설에서 직접 지상취급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공항 내 화물 운송업자용 사무실 공간이 최대 150개만을 수용할 수 있으며, 현재 39개의 한국 운송업체는 창고 사무실 건설에 투자를 하고 있음.

○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공항은 당국이 건설한 시설을 운송업체에 임대를 하고 있으므로 인천국제공항도 한국의 소규모 업체와 외국의 운송업체의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요구 사항

○ 지상 화물 취급을 외국 운송업체도 허용하며, 공항내 사무실을 임대하는 방안 검토

5. 방송광고 심사시 비용 부담(EU 177, AM)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 방송위원회의 심사시 최종 포맷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 방송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다시 제작하여야 하며 추가심사시에도 최종 포맷만을 제출토록 하여 광고 제작시 많은 시간과 비용 부담.

ㅇ 사전 심의를 실시하는 미국의 경우도 Story Board 단계에서 심의하여 기업의 비용을 덜어주고 있음.

□ 관련 근거

ㅇ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22조

□ 요구 사항

ㅇ 스토리 보드 단계에서 심사 등 방송광고심사 개선

6. 방송광고 판매시 라디오방송광고의 조건부 판매(EU 174, AM)

□ 현황 및 문제점

ㅇ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광고주가 원하지 않는 TV, 라디오 광고를 통합하여 조건부 판매를 하고 있으며, TV 방송광고의 판매는 대부분 월 단위로 제공되고 있음.

-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신규 업체나 중소기업의 광고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적은 광고 횟수와 시간대 선택권을 광고주로부터 박탈함으로써 광고 기회를 제한하고 있음.

ㅇ 또한, 민간이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판매 독점으로 광고주가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 요구 사항

ㅇ 방송광고 판매시 조건부 판매 철폐 및 중소업체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방송광고 판매의 탄력적 운용

ㅇ 방송 광고 판매시 민간기구가 참가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행 정	13 건

1. 제약업의 위탁생산 제한(KIEP, 93 PAGE)

□ 현황 및 문제점

○ 제약산업에서는 자체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하청이나 위탁생산을 이용하는 정도가 높음. 그러나 일부품목에 대해서만 위탁생산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 제약회사들에게 장애 요인으로 작용

○ 현재 의약품 11개, 화장품 3개, 의료용구 6개, 위생용품 4개, 의약부외품 5개 등의 제조공정에 대해서만 위탁생산을 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제조공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 관련 근거

○ 약사법 제26조,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28조

□ 요구 사항

○ 전품목에 대하여 위탁생산이 가능하도록 시설 기준령의 개정

2. 머리염색제의 준의약품 분류로 까다로운 등록 절차(EU, 77 PAGE)

□ 현황 및 문제점

○ 머리 염색제는 약사법에 의해 의약부외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등록 절차가 화장품 보다 까다롭고 그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림 .

○ EU는 머리 염색제를 다른 화장품과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 하고 있음.

ㅇ 머리 염색제는 내복용아닌 외부용이며,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므로 화장품으로 분류해야 함.

□ 관련 근거

ㅇ 약사법 제2조

□ 요구 사항

ㅇ 머리 염색제를 화장품으로 인정

3. 의료기기 시험시 비용부담(AM, EU 131 PAGE)

□ 현황 및 문제점

ㅇ 의료기기 진단장비는 한 제품의 신규 버전이 등록을 승인 받으면, 동일한 제품의 이전 버전은 더 이상 수입될 수 없음.

ㅇ 또한 한 제품군에 속해 있는 각 제품마다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품목번호, 제품명, 모양 등이 다른 동일한 원자재로 만들어진 제품들 경우 반복적인 테스트를 받아야 하므로 불필요한 비용 증가.

ㅇ GMP(Good Manufacture Product : 우수 의료기기 제조 품질 관리 기준)을 통과한 시험결과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

□ 관련 근거

ㅇ 약사법 제34조

□ 요구 사항

ㅇ 이전버전이 신규버전으로 대체된 후, 동일한 진단 장비의 이전 버전과 신규버전이 모두 수입이 가능하도록 개선

ㅇ 동일한 테스트에 대한 기존 시험 결과 인정
ㅇ GMP 기준 시험 결과의 인정

4. 전자상거래시 국외사이트에 대한 방문 판매법 적용(KIEP, 85 PAGE)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한국에서 상품을 파는 모든 회사는 한국에서 방문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직접 회사를 설립해야함.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위하여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하나 한국 이외의 웹사이트에서 거래하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적용하기 어려움.

□ 관련 근거

ㅇ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규칙 제10조

□ 요구 사항

ㅇ 전자상거래법을 마련하여 국외의 웹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정 마련

5. 중소기업 판정 기준 불합리(옴00, 8 PAGE)

□ 현황 및 문제점

ㅇ 중소기업 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ㅇ 종업원의 수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자산규모가 중소기업법 시행령상의 기준인 400억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인하여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다른 기업은 매출액이 1000억원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으로 취급되어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것은 불합리함.

□ 관련 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요구 사항

○ 상시 근로자의 수와 자산총액 기준에 매출액 기준을 추가하되 세가지 기준 가운데 2가지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 개선

6. 담배소매인 지정시 담배인삼공사의 조사권한 (옴00, 10 PAGE)

□ 현황 및 문제점

○ 담배 소매인 지정 권한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 지정 신청 내용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해 조사하는 권한과 신청장소가 제조담배판매업에 부적당한 장소 인지의 여부에 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권한은 담배인삼공사에 위임되어 있으며, 시장 군수 등은 그 통보내용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하고 있음.

○ 외국 담배회사와 경쟁업체인 담배인삼공사가 조사권한을 악용하여 동사 제조담배만 취급하고 외국산 담배를 취급하지 못하게 할 소지가 큼.

□ 관련 근거

○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5조 2항 1호, 시행규칙 제11조 3항 및 5항

□ 요구 사항

○ 소매인 관련 지정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

7. 공무원 순환보직제로 전문성 결여(KIEP, 149 PAGE)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공무원의 순환보직제(1~2년)로 인하여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행정 법규 적용상 자의성 개입 우려

○ 출입국 관리부서, 국세청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민원처리가 많은 부서의 경우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외국인투자가들이 일관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요구 사항

○ 민원부서의 경우 3~5년 이상의 보직기간을 적용하여 행정서비스의 연속성 및 전문성 제고

8. 공장설립 및 건축 허가시 신고서류 과다(KIEP, 120 PAGE)

□ 현황 및 문제점

○ 공장 설립 및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서, 지적도, 공장설립 승인으로 의제 처리되는 허가 등의 명세서 1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 투자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여 서류작성 및 제출에 시간적·금전적 부담 과중

○ 외국인 투자촉진법상 일괄처리 민원은 공장설립 관련 민원 위주로 되어 있어, 유통업체 들이 할인매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못함.

□ 관련 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

□ 요구 사항

○ 개별법상 규제를 완화

○ 유통업체 관련 인허가 사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일괄처리 민원에 포함

9. 신약 개발시 국제적 기준이 미적용(AM, 김민석 52/EU 153)

□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에서 임상실험을 거쳐 도입되는 신약이 ICH(International Conference of Harmonization) 가이드라인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재실험을 요구

○ ICH는 신약의 연구 개발 과정에서 수행되는 실험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합의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인종에 민감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 의약품에 대하여서도 불필요한 국내의 추가 임상실험으로 비용 발생

□ 요구 사항

○ 특별히 예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추가 실험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ICH 국제기준에 맞는 자료는 상호 인정

10. 일반 의약품 대체시 국산품 사용을 유도할 우려(AM, EU 147 PAGE)

□ 현황 및 문제점

○ 의약 분업제도에 따라 약사들이 약 성분, 효능 복용량이 동일한 한도 내에서 의사가 처방한 동일한 한도 내에서 의사가 처방한 특정 브랜드의 의약품을 일반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허용될 예정임.

○ 외국기업들은 이러한 시도가 외국의 특정 상품에 대해 자국의 일반 의약

품으로 대체하기 위한 시도로 주장하고 있음.

○ 또한, 약사가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환자의 치료에 대한 일관성을 잃을 우려도 있음.

□ 관련 근거

○ 약사법 제2조

□ 요구 사항

○ 특정 의약품에 대한 의사의 의약품 처방을 일반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허용될 경우,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불가" 항목란에 체크를 함으로써 의학상 이유로 환자에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11. 식약청 승인시 비용 부담(AM, EU, 179PAGE)

□ 현황 및 문제점

○ 식품의약안전청은 향신료 등 기타 재료 수입을 위해 승인절차를 시행하고 있음.

○ 천연제품의 경우 3개월 이상, 비 천연제품의 경우 1년 이상의 승인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 OECD 국가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양념용 식물과 향신료, 재료 등의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술적 데이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야 하는 등 많은 비용이 필요함.

□ 관련 근거

○ 식품위생법 제16조

□ 요구 사항

ㅇ 식품 첨가물에 대한 절차 간소화

12. 주류 수입업체와 생산업체의 별도 법인 운영 의무화(EU, 19PAGE)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법상 한국에서 주류를 생산하는 업체와 수입주류를 판매 유통하는 업체는 개별사업 면허를 발급 받아 각기 다른 두 개의 기업을 설립해야 함.

ㅇ 금융 기관은 각 기업에 독자적인 판매부, 창고, 유통 조직 및 개별 대차대조표를 요구하고 있음.

ㅇ 같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송장을 발부 받아야 하며, 별도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등 비용 부담이 가중됨.

□ 관련 근거

ㅇ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주세사무처리규정

□ 요구 사항

ㅇ 수입업체와 생산업체가 단일법인으로 활동할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13. 동물의약품 제조 · 수입 · 판매시 약사고용 의무(AM)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약사법 및 동물의약품 취급 규칙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제조 수입 · 판매(도매)를 할 경우 약사를 의무고용하여야 함.

○ 동물용 의약품을 제조·수입·판매(도매)하기 위하여 수의사를 별도로 고용하거나, 약사를 회사의 비용을 들여 교육하여 고용하고 있음.

○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약품은 약사의 업무 영역에 맞지 않고,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함.

□ 관련 근거

○ 약사법 제29조,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 제12조, 제15조, 제20조

□ 요구 사항

○ 동물용 의약품을 제조·수입·판매(도매)시 수의사 고용제도 개선

교육 · 생활	17 건

1. 영어 인프라 환경이 열악(KIEP, 157 PAGE)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16년간 영어 교육을 받고 나서도,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움. 이는 영어 사용권인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비해 투자 매력도에서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

○ 한국의 법규에 대한 공식적인 외국어 번역본이 없어 외국인이 한국의 제도와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내 법률회사의 자문을 얻어야 하는 등 접근이 어려움.

□ 요구 사항

○ 학교에서의 영어 교육 방향을 독해위주에서 회화위주로 개선

○ 직장에서의 영어 교육에 대한 보조금 제공
- 완전 또는 부분 보조
- 대학강좌에 대한 수강료 감면

○ 법규에 대한 공식 외국어 번역본 발행 확대

2. 취학희망자에 비해 외국인 학교 부족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국내 각종학교로 등록된 외국인학교는 19개(이중 7개는 화교학교)이며 서울 · 경기지역에 집중(11개)되어 있어 지방의 취학희망자는 취학하기 어려움 실정임.

○ 각종 학교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인가 받은 외국인학교는 19개(서울외국인학교, 서울일본인학교, 서울국제학교 등)이며, 나머지학교는 기존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단체이었으나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폐지되어 현재 제도권 밖에 있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되지 않고 있음.

□ 요구 사항

○ 지역 실정에 맞는 외국인학교의 설립을 위한 지원정책 강화

○ 제도정비를 통하여 제도권 밖의 외국인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 전문가 의견

○ 지방의 외국인 거주자현황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수요에 따라 (예:전남.광주 일본인학교) 지방 및 중앙정부 지원하 설립 검토 가능.

3. 영어 학원강사의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옴99, 24PAGE)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영어학원강사의 자격이 4년제 대학이상의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전문학원이 초청한 외국인 강사는 학원 외에 기업체 파견 강의를 2곳 이상하지 못하도록 제한

○ 학원 이외의 기업체 강의를 제한함에 따라 영어 강의를 개설하기 위한 기업의 비용부담이 늘고 있으며, 외국어 강사의 경우 생활에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학원의 경우도 비용이 증가함

□ 관련 근거

○ 학원의 설립 운영 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제10조, 제20조, 시행령 제25조

□ 요구 사항

○ 영어 강사의 경우 강의 과목이 영어인 점을 고려하여 강사의 자격 요건을 2년제 대학이상으로 완화하고, 기업체 파견강의 제한 규정을 완화

4. 외국인을 위한 부동산 알선업체 미흡(KISC생활, 1 PAGE)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한국내 거주 외국인은 미8군 쇼핑센터, 외국인학교 등이 인접해있는 용산구(이태원, 한남동 등) 일대에 주로 거주하고 있음.

○ 외국인 밀집지역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부동산 알선업체가 영문계약서 작성, 법무사 소개, 법원등기 대행 등의 서비스를 대행하는 등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를 잘 갖추고 있으나 타지역의 경우 여건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 특히, 주택구입의 경우 법원 등기 등의 문제로 인해 외국인은 전문 알선기관에의 의뢰가 필수적임.

□ 요구 사항

○ 외국인을 위한 부동산 알선업체 들을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화 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체계적인 정보 제공

- 최초 계약 단계뿐만 아니라 임대 기간 중 요구 사항 및 분쟁해결 등 사후 관리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

□ 전문가 의견

○ 외국인을 상대로 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약 50-60개 있으며 수수료는 보통 3%를 받고 있음.

○ 외국인 임대자의 경우 단순한 부동산 중개 이외에 국내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RELOCATION서비스를 중개업체로부터 받고 있음. 더욱이 외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업체만 영업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업체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받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음.

○ 부동산 거래에 관한 세부적인 현장지원은 어렵더라도 좋은 부동산 업체를 한데 묶어 외국인투자자에게 정보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5. 외국인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 부재(KISC생활, 1 PAGE)

□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을 위한 주거환경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서울 용산은 외국인의 수요에 맞게 보증금 없이 계약기간(2-3년) 동안의 임차료를 선불하는 형태가 보편화되어 있음.

○ 최근 주택가격 및 임차료 수준의 상승, 환율 하락으로 외국인은 주택구입 및 전세구입이 어려움.

○ 99년 6월 외국인에게만 공급하는 외국인 공동주택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지원이 없음.

□ 관련 근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 요구 사항

○ 외국인 주거단지 조성에 대한 지원

○ 택지 개발 예정지구내 토지를 외국인 주거 용지로 분양

□ 전문가 의견

ㅇ 서울시의 한남동 주거단지를 비롯 일부 업체들의 외국인 임대주거 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수요 증가에 따라 민간건설업체의 추가적인 진출이 예상되고 있음.

ㅇ 현재의 2-3년 임대료의 일괄납부 문제는 수요 공급 불균형에 따른 공급자의 독과점 현상에 따른 결과로서 공급이 증가되면 점차 해소될 전망.

6. ARS 응답시 영어 안내 미흡(KISC생활, 3 PAGE)

□ 현황 및 문제점

ㅇ 대기업을 비롯하여 주요기관의 안내전화가 대부분 ARS(자동안내전화)로 안내하고 있음.

ㅇ 외국인 투자기업은 한글과 외국어로 안내를 하고 있으나 국내의 대기업 및 주요기관의 대표전화가 대부분 한글로만 안내를 하고 있어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의 경우 전화 번호가 있어도 전화 시도 후 연결할 방법이 없음.

□ 요구 사항

ㅇ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회사, 호텔, 은행 등 각 기관의 대표전화의 ARS 운영시 영어 안내 유도

7. 전화 가입시 영문 신청서 미비(KISC생활, 3 PAGE)

□ 현황 및 문제점

ㅇ 외국인이 국내에서 이동 전화 가입시 영문으로 된 서식이 없어 혼자서는 작성이 어려움.

○ 한국통신, 신세기통신, 한솔, 데이콤 등 일부업체는 영문 서식을 비치하고 있으나 온세통신, 하나로 통신, LG, 한솔통신 등 다수의 업체들이 아직 영문가입 신청서를 구비하고 있지 않음.

□ 요구 사항

○ 영문서식 비치를 유도

8. 외국인을 위한 병원 시설 미흡(KISC생활, 5 PAGE)

□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을 위한 국제 클리닉을 운영하는 병원은 대부분 서울에 위치(서울시내 10개 종합병원, 8개 개인병원)하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 일부 시·도(대구, 울산, 강원)에서 운용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

○ 국제 클리닉을 운영하지 않는 병원의 경우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해 접수, 진료, 처방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애로 발생.

○ 외국어 구사 가능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진료의 필요성 인식 부족으로 외국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긴급신고전화(119) 이용시 외국어 구사자가 한정되어 있어 긴급한 의료사고 발생시 외국인이 도움을 받기가 어려움.

□ 요구 사항

○ 외국인 전용클리닉의 시도별 운영 확대(수요인원을 감안해 요일별 운영)
○ 외국인 진료 가능 병원을 알선해 주는 서비스 운영
○ 119 이용시 별도의 외국인 전용 신고 전화 운영

9. 병원 이용시 신용카드 사용 불가(KISC생활, 5 PAGE)

□ 현황 및 문제점

ㅇ 병원 이용시 진료비, 입원비 등을 지불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을 선호하고 있으나, 병원 측에서는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ㅇ 최근 의료 기관의 신용카드 가맹이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ㅇ 외국에서는 병원에서 신용카드로 수납받는 것이 일반적임.

□ 요구 사항

ㅇ 의료기관이 신용카드 가맹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 확대 유도

10. 외국운전면허증을 국내면허로 교환시 장시간 소요 (KISC생활, 12 PAGE)

□ 현황 및 문제점

ㅇ 외국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변경 발급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국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사진, 외국면허증 발급 국가의 주한 대사관 확인서(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6개국은 면제)를 제출하여야 함.

ㅇ 확인서를 받기 위하여 상기 6개국 이외의 경우는 발급 국가에 주재하는 한국공관의 조회 확인 절차(3~4개월)가 추가되고 있음.

ㅇ 발급국가 대사관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민원절차가 면허 시험장내에서 종결되지 않고 대사관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발급국 확인조회까지 거칠 경우 장시간이 소요됨.

□ 요구 사항

○ 위·변조 및 부정 발급의 가능성이 현저히 우려되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발급국가의 주한 대사관 확인서 첨부를 면제

11. 외국인이 국내의 운전면허 취득시 영어 안내 미흡 (KISC생활, 12 PAGE)

□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이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국제면허증 사용, 외국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변경 발급, 신규 면허증 취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운전면허시험장에 영문 안내가 없고 외국어 능통자가 적어 각종 신고나 시험응시의 경우 내국인을 동행하지 않으면 불편.

○ 운전면허시험장의 안내전화가 ARS(한국어)로 안내되어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외국인의 접근이 어려움.

□ 요구 사항

○ 각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에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한 영문 안내서 비치

○ 운전면허시험장의 안내전화가 ARS시 영어 공동 사용

12. 자동차 구입, 등록시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기관 부재 (KISC생활, 14 PAGE)

□ 현황 및 문제점

○ 소비자가 자동차 신차 구입시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신규등록서비스를 대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중고차 구입시에도 등록 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나 신규 등록의 경우처럼 의무적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며 중고차 매매상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구입시 구매자가 직접 등록 절차를 밟아야함.

○ 신차구입시 자동차 대리점에서 판매와 연계하여 보험서비스 가입을 제공하고 있으나, 중고차 구입시에는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함.

○ 자동차의 구입, 등록, 보험가입, 양도, 폐차와 같은 절차에 대하여 외국인에게 일괄적으로 서비스하는 기관이 없음.

○ 내국인의 도움이 없이는 제반 절차를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며, 신차 구입의 경우도 자동차 대리점 및 영업사원의 외국어 능력과 경험에 전적으로 의존할 뿐이며, 특별히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마케팅 활동이 취약함.

□ 요구 사항

○ 자동차 매매업자의 외국인을 위한 대행서비스 강화

13. 교통 시설물의 영문병기 부족(KISC생활, 16 PAGE)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 표지판, 버스정류장 및 버스내의 노선안내도, 기차 및 지하철의 노선 안내도 등 주요 교통 수단 중 일부분만 영문 표기를 하고 있어 외국인의 이용이 불편함.

○ 관광안내도 등 간단한 형태의 영문지도는 있으나, 외국인이 자가 운전이나 대중 교통 수단 이용시 참고할 만한 전국적인 도로 교통도는 없음.

□ 요구 사항

- ㅇ 전국도로 표지판의 영문 병기 지속적 확대
- ㅇ 버스정류장 및 버스내의 노선안내도, 기차 및 지하철의 노선 안내도 등 영문 병기 확대
- ㅇ 영문 지도 제작

14. 이사화물 통관 시 불필요한 서류 요구(KISC생활, 17 PAGE)

□ 현황 및 문제점

- ㅇ 이사화물 통관시 통관절차 및 면세·과세 기준에 대한 명확한 영문 안내 자료가 없어 통관시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불만을 야기

- ㅇ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외국에서는 거의 요구하고 있지 않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 소유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외국에서 자동차를 구입 등록하여 운행한 증거서류 등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음.

□ 요구 사항

- ㅇ 제반 통관절차 및 과세기준에 대한 영문 안내 안내문 준비
- ㅇ 구비 서류 간소화 추진

15. 외국인의 문화생활을 위한 안내자료 부족(KISC생활, 21 PAGE)

□ 현황 및 문제점

- ㅇ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외국인 투자가의 여가 생활을 즐겁게 보내도록 안내해 줄만한 홍보자료가 부족

○ 선진국의 경우 주요 도시별로 문화생활, 영화, 연극, 오페라 일정, 음식점 소개 및 전통민속 연극, 골프장, 스키장 등을 돌아볼 수 있는 문화생활용 영문 홍보지를 격월간 또는 월간으로 발간, 호텔이나 관광 안내소 등에 배포하고 있음.

○ 한국에서는 영자신문, AFKN 등으로만 생활정보를 접하고 있어 여가 선용에 애로가 있음.

□ 요구 사항

○ 문화, 예술, 체육 등 문화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

○ 한국관광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타와 연계하여 외국인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여가 생활 정보를 검색토록 지원

16. 전자상거래시 주민등록번호 요구(옴)

□ 현황 및 문제점

○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국내업체에 자제를 공급하고자할 경우 또는 백화점 등 인터넷 쇼핑몰, 국내 호텔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등록 기준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외국인등록번호는 주민등록체계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회사의 프로그램이 외국인 등록번호를 인식하지 못하여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요구 사항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

17. 다양한 종류의 외국 음식점 부족(EU, 183 PAGE)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 비해 외국음식을 접할 기회가 적음

○ 이는 한국이 OECD 회원국, 동북아 지역의 거점,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국가로서 한국의 관광객 유치 및 외국인 투자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외국 음식점의 확대가 필요

□ 요구 사항

○ 다양한 외국 음식 재료의 수입 촉진

○ 외국 음식점의 전국적 보급 및 요리사 교육

출입국관리	3 건

1. 외국인 체류 허용기간 제한(KIEP, 117 PAGE)

□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상한을 적용받고 있음.

○ 다년간 국내 체류가 필요한 기술지도체류자격자(2년), 기업투자체류자격자(2년), 주재원체류자격자(2년)의 경우 체류허용기간 상한이 너무 짧음.

○ 또한, 우수한 외국인력 및 CEO를 유치하기 위한 출입국에 관한 인센티브가 없음.

□ 관련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시행령 제23조

□ 요구 사항

○ 고도기술 수반사업 인정기업,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NT마크 획득 기업,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벤처기업 등 일정 기준 이상의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등 신축적 운용

○ CEO, IT업종 · 생명공학 등 특정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등 일정 분야의 인력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 전문가 의견

○ 현행 출입국관리법령은 상호주의 입장에서 체류자격별로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그 기간을 초과해서 다년간 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체류기간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류기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세계경제시대의 조류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다년간 체류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간만큼 체류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상한을 확대하거나 체류기간상한을 초과해서 체류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 탄력적인 체류기간부여제도의 시행 등 상호주의적 입장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 지문 날인 제도(옴99, 34 PAGE)

□ 현황 및 문제점

○ 1년 이상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등록자의 지문날인 제도가 현재 열손가락에 대하여 지문날인을 의무화하고 있어 외국인투자가의 인권침해 우려

○ 외국인의 사고시 신원확인을 위하여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외국 기업체의 대표자가 국내에 사업상 입국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지문날인을 의무화함에 따라 많은 불만을 야기

□ 관련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 요구 사항

○ 외국인의 열손가락 지문 날인 제도를 오른손 엄지 하나만 날인하는 수준으로 제도 완화

□ 전문가 의견

ㅇ 범죄 피의자가 아닌 외국인에게 열 손가락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해당인이 범죄피의자로 취급당하는 불쾌감을 일으킬 것인 바, 지문날인 이외의 제도를 강구하거나 최소한의 지문날인제도로 변경필요.

□ 정부측 의견

ㅇ 열손가락 지문채취 대신 한 손가락 지문채취 또는 셀룰로이드에의 지문 채취 방법으로의 대체 고려

3.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시 대리인 출석에 대한 자의적 해석 (김민석,25PAGE)

□ 현황 및 문제점

ㅇ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활동할 경우 최초에는 지문채취를 위해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나, 체류기간이 만료 시 연장을 할 경우 위임받은 대리인이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ㅇ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대리인 출석을 제한할 경우를 '본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선담당자의 편의적 해석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고 있음.

□ 관련 근거

ㅇ 체류 자격 외 활동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 요구 사항

ㅇ 대리 출석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

□ 전문가 의견

ㅇ 일선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출석이 필요한 경우를 명시하거나 본인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일정한 엄격한 절차를 경유하도록 규정함이 타당

지적재산권	2 건

1. 위조품의 수입·유통으로 인한 피해(AM, KIEP, 75 PAGE)

□ 현황 및 문제점

ㅇ 대다수의 외국인들은 위조품에 대한 단속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여기고 있음.

ㅇ 특히 상표권의 경우 병행수입업자가 외국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복제품을 제조하여 병행수입제품과 함께 판매하는 경우가 많음.

ㅇ 또한 한국에서 제조한 위조 상품이 유럽, 일본, 미국 등에 수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세관 당국이 철저한 검사를 하지 않고 있음.

□ 관련 근거

ㅇ 상표법 제7조,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요구 사항

ㅇ 위조품의 수입·제조·유통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활동의 강화
ㅇ 세관 당국이 실제 검거 결과를 수록하여 보고서 작성

□ 전문가 의견

ㅇ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해서도 위조품의 수입·제조·유통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활동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ㅇ 특히, 위조품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세관의 검사가 강화되어야 하며, 실제검거 및 처리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하는 것도 지적재산권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표시의 한 방안으로 보임.

ㅇ 또한, 위조품 수입자 및 유통자를 검거후, 이에 대한 사법처리가 약식기소 등으로 가볍게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기도 함.

ㅇ 따라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KIEP, 75 PAGE)

□ 현황 및 문제점

ㅇ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 보다 높음.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는 고부가가치 고용의 창출과 고도기술분야 및 기술개발 분야의 투자를 저해하고 있음.

ㅇ 특히, 관공서, 학교 등 일부기관에서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관련 근거

ㅇ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요구 사항

ㅇ 불법 복제품의 유통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활동 강화

□ 전문가 의견

ㅇ 정보통신업의 세계적인 발전추세와 더불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품의 제조 및 유통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활동의 강화가 요망됨.

기 타	4 건

1. 변호사업 진입 제한(KIEP, 132 PAGE)

□ 현황 및 문제점

○ 변호사법 제27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국내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의 동업이나 고용형태를 통한 법률 사무 처리가 금지되고 있음.

○ 외국인 투자가들은 자신들이 본국에서 자문을 의뢰하는 법률회사가 국내에 진출하지 못하여, 홍콩이나 싱가폴에서 영업중인 자국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음.

□ 관련 근거

○ 변호사법 제6조, 제27조

□ 요구 사항

○ 일정 기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외국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외국 법률 회사의 국내 진출 허용하고, 단 허용시 외국법 또는 국제법에 대한 자문으로 제한하는 방안 검토

○ 원자격국법 뿐만 아니라 제3국법에 관한 법률 사무 취급도 허용

□ 전문가 의견

○ 내국 변호사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에 관한 법률사무를 직접 또는 외국변호사를 고용하여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외국변호사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외국변호사가 내국변호사를 고용하여 국내인 또는 국내법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변호사가 사명으로 하는 사회정의의 정신에 어긋난 것임.

ㅇ 법률 시장의 조기개방을 통한 경쟁촉진으로 법률서비스의 개선 및 비용·부담경감 도모함이 타당

2. 일간신문, 위성방송 등 투자제한(KIEP, 134 PAGE)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일간신문 발행에 대해 투자비율 30% 미만의 외국인투자만 허용하고 있으며 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불허

ㅇ 외국인투자가들이 영자신문과 위성방송 등 뉴스 매체에 대해 신속하게 접근할 수 없어 정보 획득과 생활 환경상 애로

□ 관련 근거

ㅇ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9조

□ 요구 사항

ㅇ 영자신문, 위성방송 등 여론 형성에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제한 완화

□ 전문가 의견

ㅇ 외국인 투자 금지, 제한을 철폐 내지 완화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라도 국내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여 최고,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

ㅇ 국익과 공서양속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미치거나 저해할 소지가 크지 않은 분야의 일간신문 및 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완화를 통하여 각 분야의 동향에 관한 다양한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의 전파 및 그로 인한 공정한 여론형성과 국민생활의 발전 도모함이 타당

3. 뉴스 공급업의 진입 규제(옴99, 37 PAGE)

□ 현황 및 문제점

○ 뉴스 공급업 분야의 외국기업 규제로 인하여 현재 로이터 통신 등 해외 통신사들을 연합통신을 경유하여 국내언론사에 해외 뉴스를 공급할 수 있으며, 국내언론사에 직접 뉴스를 공급할 수 없음.

○ 외국의 경우 직접 뉴스 공급이 가능

□ 관련 근거

○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 요구 사항

○ 외국 통신사가 연합통신을 경유하지 않고 국내 언론사에 직접 뉴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전문가 의견

○ 통신업 영위를 위해 전파법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이 필요 불가결한 시설이 아님에도 필요이상의 시설인 동 시설의 구비를 통신업 발행의 선행절차인 등록사항으로 하는 것은 정기간행물 등록의 목적에 비하여 지나친 것으로 합리성이 없으며 통신업에의 추가진입을 봉쇄하는 수단의 구실밖에 하지 못함.

○ 경쟁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행 뉴스공급업 등록사항 개정 필요

4. 중소규모 외국인투자 지원 미흡(KIEP, 152 PAGE)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중소규모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도가 상대적으로 미흡

○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 대상에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 이상,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상시 고용규모가 1천명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불 이상이고 상시고용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경우 등 대규모 투자중심으로 되어 있음.

□ 관련 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 요구 사항

○ 외국인투자지역에 중소규모 외국인투자기업이 그룹을 이루어 입주할 수 있게 하고, 허가후 1~2개 기업이 투자 계획을 취소하여도 나머지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

□ 전문가 의견

○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당해 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등 각종 특혜가 주어지는 만큼 투자규모나 고용유발효과의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투자에 대해 같은 혜택을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인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만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현행제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외국인투자 전용단지를 지정하고 동 단지에 입주할 경우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일정비율 감면해 주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소정의 각종 지원을 제공할 필요있음.